

2024년 2월 경상남도 반사회 홍보 목록

연번	홍보내용	담당부서	페이지
1	제105주년 3·1절 기념 "영웅" 무료상영 안내(신규)	행정과	1
2	남부내륙철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나요?	물류공항철도과	2
3	청년마음단디(경남청년마음건강센터) 상담 안내	보건행정과	4
4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아시나요?	자치경찰위원회	5
5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시행	건설지원과	8
6	알뜰교통카드로 교통비 월 최대 30% 할인	교통정책과	9
7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토지정보과	11
8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문화예술과	13
9	설 연휴 기간에도 안심하고 의료서비스 받으세요!	의료정책과	16
10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제안 캠페인	의료정책과	17
11	소 럼피스킨병 방역 강화 및 조기 신고 안내	동물방역과	19
12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공감 동물병원 지정·운영	동물방역과	21
13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동물방역과	24
14	홍역(제2급 감염병) 감시강화 및 예방접종 안내(신규)	감염병관리과	26
15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안내	감염병관리과	33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안내	감염병관리과	34
17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 입학 전 예방접종 확인	감염병관리과	36
18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기후대기과	37
19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하고 인센티브 받아주세요!	기후대기과	39
20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안내(경남스마트쉼센터)	정보통신담당관	41
21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희망보험	사회재난과	42
22	(055) 120으로 전화주세요! 민원상담이 쉬워집니다	도민봉사과	45
23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사업	보육정책과	46
24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이용 안내	보육정책과	49
25	가정양육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정책과	52
26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에너지산업과	55
27	2023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안내	에너지산업과	56
28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결함 보상) 신청 안내	에너지산업과	58
29	에너지 절약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받아주세요!	에너지산업과	62
30	고충해결, 권리보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요청하세요!	법무담당관	63
31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안내	건축주택과	66

연번	홍 보 내 용	담당부서	페이지
32	경상남도 전세피해 지원 안내	건축주택과	68
33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신청 안내	건축주택과	71
34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신청 안내	건축주택과	72
35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신청 안내	건축주택과	73
36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건축주택과	75
37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 신청 안내	건축주택과	77
38	공간정보 기반 도민 생활 밀접 정보 서비스 안내	토지정보과	78
39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관리방안 주요내용	환경정책과	80
40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함께해요!	환경정책과	83
41	폐가전제품, 내 집앞 맞춤수거서비스 신청 안내	환경정책과	85
42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자연재난과	88
43	(전문)가정위탁제도 부모 모집 홍보	아동청소년과	90
44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	아동청소년과	92
45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신규)	수질관리과	94
46	반려동물지원센터 정식 개장(신규)	밀양시 축산과	95

제105주년 3·1절 기념 “영웅” 무료상영 안내

(자료제공: 행정국 행정과 ☎ 211-3614)

경남도에서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기념식과 함께 뮤지컬 영화 “영웅”을 무료상영하오니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 영화 “영웅” 무료상영

- 일시 : 2024. 3. 1.(금) 11:30 ~ 13:30
- 장소 :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
- 인원 : 600명 한정 ※ 선착순 입장
- 상영영화 : 뮤지컬 영화 “영웅”
 -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룬 동명의 뮤지컬을 기반으로 제작된 뮤지컬 영화



□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

① 경상남도 3·1절 기념식

- 일시/장소 : 2024. 3. 1.(금) 10:00 / 도청 대강당(신관 1층)
- 참석대상 : 400여명(독립유공자 유가족, 도민, 보훈단체장, 도단위 기관장 등)
- 주요내용 :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만세삼창 등

② 경남의 독립운동 기록전시회

- 일시 : 2024. 3. 1.(금) 09:00 ~ 14:00
- 장소 :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
- 내용 : 경남의 독립운동 기록물 등 기념전시



남부내륙철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나요?

(자료제공: 교통건설국 물류공항철도과 ☎ 211-4694)

경남도민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를 절차대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노 선 : 경북 김천 ~ 경남 거제 ○ 사업기간 : 2019 ~ 2030년*
- 사 업 비 : 6조 8,664억 원**('23.9기준) ○ 사업규모 : 177.9km(단선)
- * (변경사유)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공사기간 감안 ** (당초) 4조9438억원 [증 1.9조, 39%]

□ 추진상황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 : '19. 1.
-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고시 : '22. 1.
- 1~9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24.6.12.) : '22. 6.
-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 '23. 9.

□ 최근이슈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의 원인이 사업비 증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무산(포기)시키거나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인가?
-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는 증가된 사업비에 한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더 좋은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적절차이며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24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

【10.10.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시, 국토부장관·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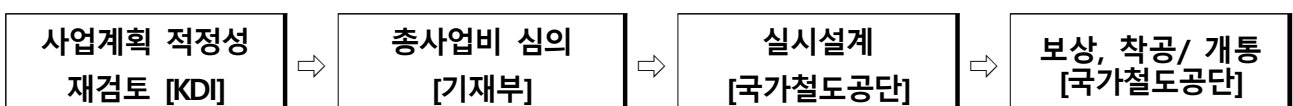
-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액 시 과거부터 예외 없이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했다"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9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 최대한 단축 노력"

【10.19.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시, 경제부총리 확대】

- 당초 예타 면제된 사업으로 사업비 증가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전제로 KDI측에 적극적이고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경남도의 역할

- 국토부, 기재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과 '24년 하반기 착공 방안 논의 (지속 <향후일정>





청년마음단디(경남청년마음건강센터) 상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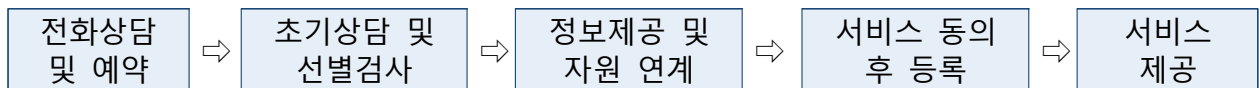
(자료제공: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 211-4933)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청년마음단디(경남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 운영 중인 무료 정신건강상담 안내입니다.

□ 청년마음단디 이용안내

- 이용대상 : 19세 ~ 34세 청년
-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
- 센터위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빌딩 2층(상남동)
- 상담방법
 - 전화상담 : 055)286-1008(청년마음단디), 1577-0199(정신건강상담전화)
 - 방문상담 : (사전 예약제) 방문 전 전화예약 필요
 - 온라인상담 : <http://www.minddandi.or.kr>

○ 상담절차



○ 서비스 내용

- 정신건강 상담 및 검사(자기보고식 설문지 작성을 통해 마음상태 평가)
- 마음건강주치의 : 정신건강전문의와 상담을 통한 진단 및 기능 평가
- 센터 등록회원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 그룹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운영 : 왜곡된 생각과 판단을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 나가고, 현실 감각과 사회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기정신증 특화 프로그램
- 마음건강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비, 입원비, 검사비 등 지원(등록회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센터 홈페이지 참조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아시나요?

(자료제공: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211-0925)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가깝게, 누구보다 안전하게 언제 어디서나
도민의 곁을 지키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 자치경찰제란?

- 주민이 원하는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사업

○ 우리동네 파수꾼 사업

2인 1조의 우리동네파수꾼이 범죠평방진단팀과 연계하여 도서벽지, 시골지역의 우범·취약지역 내 범죠평방 순찰, 마을 생활치안 불안요소 사전 점검 및 주민 의견 수렴

○ 스토킹 등 피해자 신변보호사업

스토킹 등 고위험 피해자 중 추가피해 위험이 현저한 사람을 선정, 경찰신변보호에 민간경호 지원을 더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 관할 경찰서에서 스토킹 등 고위험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결정

○ 아동 안전 지킴이 운영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치안활동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보행자 중심 교통 및 안전 체계 강화 사업

- 인도가 미조성된 시외 마을통과구간 도로의 야간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도로 가장자리 구역선에 LED표지병 설치
-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2021. 7. 1.
대한민국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01 자치경찰제란?

주민이 원하는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합니다.

02 자치경찰위원회란?

시·도지사로부터 직무상 독립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행정기관입니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합니다. 위원회 실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주요기능



03 자치경찰사무는 무엇인가요?

지역 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말합니다.



주민 생활안전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지역교통

교통법규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



수사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수사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수사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수사 등



사회적 약자보호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예방

04 뭐가 좋아지나요?

지역 실정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던 획일적인 치안 정책에서 탈피,
주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치경찰이 됩니다.
도시는 물론 농·산·어촌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시행

(자료제공: 교통건설국 건설지원과 ☎ 211-2993)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마창대교 통행료가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20% 할인됩니다.

□ 마창대교 현황

민자도로명	구 간	규 모	통행료 수납기간	비고
마창대교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 성산구 귀산동	L=1.7km (4차로)	'08.07.15.~'38.07.14. (30년)	

□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 기 간 : '23. 7. 1. ~ '26. 6. 30. (3년간)
- 할인시간 : 평일(주말, 공휴일 제외) 출퇴근 시간(07:00~09:00, 17:00~19:00) 4시간
- 통 행 료 : 징수통행료를 20% 할인한 금액

구 분	소 형	중 형	대 형	특대형	비 고
징수통행료	2,500원	3,100원	3,800원	5,000원	
할인통행료	2,000원	2,500원	3,000원	4,000원	출퇴근 시간 적용

- 참고사항 : 경차, 장애인차량 및 할인통행권 이용차량 등 중복 할인 미적용

□ 관련문의

구 분	경상남도 건설지원과(주무관청)	(주)마창대교(도로운영사)
연락처	055-211-2993	055-710-2000

알뜰교통카드로 교통비 월 최대 30% 할인

(자료제공: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211-4135)

□ 알뜰교통카드란?

- 도민에게 교통비 혜택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할인해주는 카드입니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만 19세 이상 도민
- 지원(적립)금액 : 교통비의 약 20%, 카드사 전월실적 충족 시 10% 추가 적립

편도 교통요금별 적립액	2천원 미만	2천원~3천원	3천원 이상	비고
일반(월 최대)	250원(15,000원)	350원(21,000원)	450원(27,000원)	보행·자전거로 800m 이동 시 (800m 미만은 비례지급)
청년층*(월 최대)	350원(21,000원)	500원(30,000원)	650원(39,000원)	
저소득층**(월 최대)	700원(42,000원)	900원(54,000원)	1,100원(66,000원)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34세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기준 : 최소 월 15회 ~ 최대 60회 이용 ※ 전국 어디서나 이용가능
- 지급방법 : 교통비 사용 다음달 결제대금 차감 혹은 계좌입금

□ 이용방법

- 알뜰교통카드 발급(온라인 또는 은행) 및 수령
 - 카드사 : 신한·우리·하나·삼성·KB국민·현대·NH농협·BC·캐시비·DGB유페이
- 알뜰교통카드 앱 설치(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 대중교통 이용 시 알뜰교통카드로 결제
- 마일리지 적립 방식에 따라 마일리지 산정
- 15회 이상 이용 시 마일리지 지급 ※ 다음달 7일경 문자로 적립내역 안내

01 알뜰교통카드 사업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거리(보행, 자전거 등)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사업



02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대중교통요금과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적립

- ※ 이동거리 확인 불가 시 최소 마일리지(50원) 지급
-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 환경·교통 관련 기념일 마일리지 2배 지급

기본 마일리지	2천원 미만	2천원~3천원	3천원 이상	비고
일반층	250원	350원	450원	이동거리 800m기준 (800m 미만 시 거리 비례 지급)
청년층*	350원	500원	650원	
저소득층**	700원	900원	1,100원	

-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03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 기준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지급

- ※ 가입 첫 달의 경우 15회 미만도 적립액 지급
- ※ 60회 이상 이용 시 적립금이 많은 순으로 60회에 대한 적립 금액 지급

04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 방법

알뜰교통카드 사용 익월에 청구 할인(신용카드), 계좌 입금(체크카드), 충전(모바일선불카드) 방식 등 카드사의 지급 방식에 따라 지급 (카드사 추가 혜택 별도지급)

- ※ 하나카드의 경우 알뜰교통카드 사용 2개월 후에 마일리지 지급

05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방법

출발·도착 입력, 즐겨찾기 등록, 도보수로 산출된 마일리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립

- 출발·도착 입력 시 출발 위치~승차정류장 위치와 하차정류장 위치~도착 위치 직선거리의 1.3배 적립
※ 출발·도착 미입력 시 최소 마일리지(50원)가 적립됩니다.
- 즐거찾기 등록 시 등록된 출발 및 도착 위치와 승·하차정류장 위치의 직선거리의 1.3배 적립
※ 미등록 정류장 이용 시 최소 마일리지(50원)가 적립됩니다.
- 신체활동, 건강 등 도보수 수집 권한 허용 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한 15분 도보수에 평균 도보거리를 적용하여 산출
※ 도보수 체크 기능이 없을 경우 마일리지 산출되지 않습니다.

06 알뜰교통카드 사용 절차

- 알뜰교통카드 발급
※ 신한, 우리, 하나, 삼성, KB국민, 현대, NH농협, BC(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바로카드), 캐시비, DGB유페이 (티머니는 신규 발급 중단)
- 알뜰교통카드 앱 설치
※ 구글 play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윈스토어
-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
※ 주소지 검증은 주민등록번호로 인증(등, 초본 불필요), 저소득 증빙 자료는 별도 제출
- 대중교통 이용 시 알뜰교통카드로 결제
- 마일리지 적립 방식에 따라 마일리지 산정
※ 카드사 정보 수신 시기에 따라 3~10일 정도 소요됩니다.(지역별로 상이)
- 15회 이상 이용 시 마일리지 지급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자료제공: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211-4445)

□ 계약 전에는?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
- 적정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80%를 넘어서면 강통전세 위험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 ※ 건물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면 반드시 신탁원부 발급받아서 세부 내용 확인 할 것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수탁자(신탁회사) 동의서 반드시 받은 후 계약진행 할 것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계약 전 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 가능

□ 계약체결 시에는?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신분증 확인, 보증금 입금시 임대인 명의 계좌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gov.kr)에서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 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활용

□ 계약 후에는?

- 주택임대차 신고 신고대상: 市 지역,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권리관계 변동 확인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사항 확인
- 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 의무,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 발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 대신하여 책임지는 상품
 -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보증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해드립니다('23. 하반기 시행 예정)
 -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도민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전		
<input type="checkbox"/> 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 • 현장 확인
<input type="checkbox"/> 적정 전세가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 부동산 정보 사이트(이비서 부동산, 직방 등)를 통한 적정 시세 체크 •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 지역별 전세가를 체크(www.rtech.or.kr)
<input type="checkbox"/>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input type="checkbox"/>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23.4월부터)
계약 체결 시 (보증)		
<input type="checkbox"/>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 • (위임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 국가공인정보포털(www.nsd.go.kr) → 부동산중개업 조회
<input type="checkbox"/>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input type="checkbox"/> 권리관계 재확인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계약 체결 후		
<input type="checkbox"/> 임대차신고	• 법정의무(「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계약 후 30일 이내) • 확정일자 자동부여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ms.molit.go.kr)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잔금 및 이사 후		
<input type="checkbox"/>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input type="checkbox"/> 전입신고	• 법정의무(「주민등록법」 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 대학력 확보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input type="checkbox"/>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거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국토교통부 RCB 한국부동산원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하세요.
-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적정 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를(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 부동산테크(www.m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이비서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가격과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소, www.iros.go.kr)을 통해 가동기·기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임대인 동의 필요)
-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23.4월 부터)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영의의 계약자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국가공인정보포털(www.nsd.go.kr)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 ▶ 중개대상을 확인·상정시, 손해배상책임 관련 중서 등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일 급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문의처

전세피해 지원센터 ☎ 1533-8119 신고 접수, 법률상담 등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장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채임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영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및 익일에 대장력이 발생합니다.
-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거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자료제공: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211-4544)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누리카드' 주요 내용 및 발급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 문화누리카드란?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의거하여,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활동 지원 카드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017.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1인당 연 11만원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발급기간 : 2023. 2. 1. ~ 2023. 11. 30.까지 ※ 예산 소진 시 발급 조기 마감
- 사용기간 : 발급일 ~ 2023. 12. 31.까지

□ 카드발급 및 이용 안내

- 카드발급
 - (자동재충전) '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주민센터)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누리집 및 모바일 앱)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 필요
 - (전화 ARS, ☎1544-3412)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자 ※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 이용방법 : 등록된 카드 가맹점(지정된 업종)에서 사용
 - (가맹점검색)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문화누리카드 앱 [사용하기] 오프라인/온라인 가맹점 검색
 - (이용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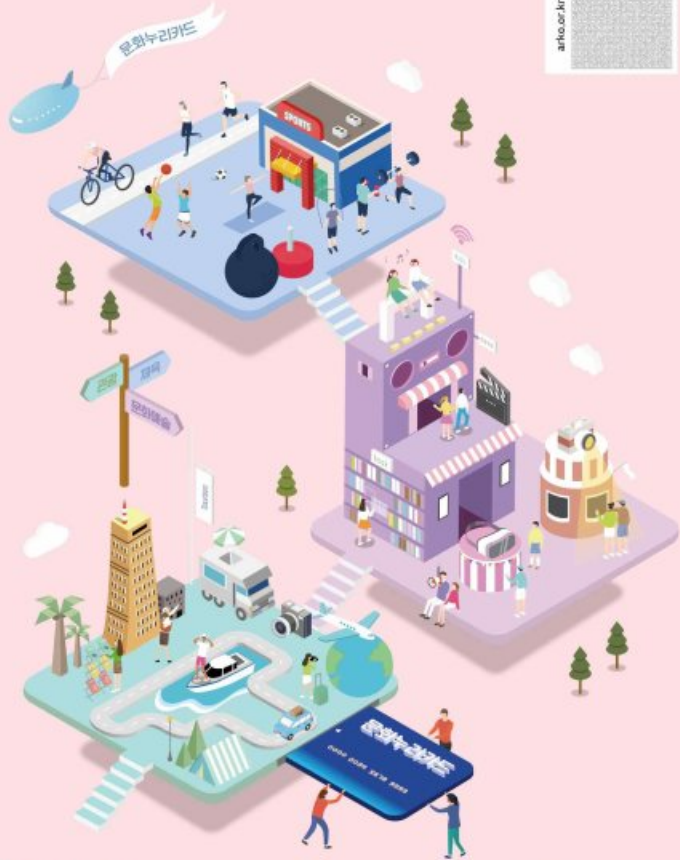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2023년 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지원카드



2023년 문화누리카드 지원 및 발급(신규/재충전) 안내

-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7.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금액 1인당 연 11만원
- 발급기간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 ※ 주민등록주소지(사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금 문화누리카드 SNS채널에 접속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카카오채널



네이버 블로그

자동재충전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드립니다. (2023년 1월 말, 자동재충전 원료 문자 발송 예정)

※ 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누리집, 모바일앱)을 통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재충전이 되지 않거나, 신규로 신청할 경우 하단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해주세요.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누리집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
www.mnuri.kr 접속
→ [카드발급/전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클릭



모바일앱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 [카드발급]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클릭



전화ARS

1544-3412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
유효기간 '26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소지한 경우
※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개별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설 대표자가 위임을 받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svoucher.kspo.or.kr)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dvoucher.kspo.or.kr)도 사용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위원회

어르신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주요 가맹점

검색방법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앱 [사용하기] 오프라인/온라인 가맹점 검색

이용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2022.12.31.기준

문화예술	도서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 콘텐츠, 신문
	음악	음반, 음원 콘텐츠, 악기(악기 부속품)
	영화	영화, 영상콘텐츠(OTT서비스-티빙, 왓차, 넷플릭스 등)
	TV	케이블 TV, 위성방송
	공연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전시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공예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사진관	사진촬영, 사진 인화
	문화체험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 사이트 등), 온라인 취미클래스, 한복 대여, VR 체험, 드론 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국내여행	교통	철도, 시외/고속버스,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여행사	여행사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온천	온천
	체험관광	지역문화축제,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숙박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체육활동	스포츠관람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구단 공식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체육시설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낚시,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 체육시설이용 플랫폼, 스크린 체육시설, 레저스포츠

시니어 이용정보

2022.12.31.기준

- 만 65세 이상 KTX, 새마을호(ITX-새마을), 무궁화호(누리로) 30% 할인(토·일 공휴일 제외)
국립자연휴양림 실버전용 우선 예약 추천제 시행 (매달 4일 9:00~ 8일 18:00, 전화신청 1800-9448)
- 전화결제 가맹점 안내
 - ※ 전화결제 방법과 가맹점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및 주관처에 문의해주세요.
 - 악기 : 미텐바흐, 백년대구음악사, 울산뮤직, 유정악기프라자, 구일악기사, 크로바뮤직
 - 공예품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박물관, 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아트샵, 주식회사 로담, 봉이공방, 연지, 은꽃, 이음새, 펠롱 도채비, 해녀의 태약, 흰여울작업실
 - 캠핑용품 : 캠핑트렁크 대구점
 - 체육용품 : 아름다운스포츠, 야구일번지, 서울대운동용품



설 연휴 기간에도 안심하고 의료서비스 받으세요!

(자료제공: 보건의료국 의료정책과 ☎ 211-5071)

설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 대비 도내 전 지역 응급진료체계 가동 및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 운영 안내 등 안심하고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설 연휴기간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 희망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 운영
- 다중 이용시설에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안내문 부착과 인터넷 등으로 안내

(전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20(도콜센터)

(인터넷) 검색창에 ‘명절병원’ 검색, 경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앱)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 * 비대면진료 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기관소식 → HIRA 소식 → 심평정보통

○ 설 연휴기간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 기 간 : 2024. 2. 9.(금) ~ 2. 12.(월), <4일간>
- 상황실 : 도 및 21개 전 시·군 보건소 비상근무(09:00~18:00)
- ※ 18시 이후 :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유지

○ 응급의료기관(35개소), 응급의료시설(15개소)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 중증응급환자 병원 선정 및 병원 간 전원 상시 조정·지원

- 실시간 대응을 위한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23. 12. 1. ~
- 24시간 근무로 휴일·야간에 응급환자 불수용에 대한 사각지대 보완

○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 등 상시 대기

- 재난거점병원* 및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42개반) 출동하여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등 현장응급의료 지원 예정 *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제안 캠페인

(자료제공: 보건의료국 의료정책과 ☎ 211-5085)

□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란?

- 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치료적기에 응급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도민의 응급실 이용문화 제안 안내

□ 응급실 이용문화 5대 수칙

- (1) 응급실 진료순서는 위급한 순서대로
- (2) 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게 양보해 주세요
- (3) 보호자 출입은 진료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만
- (4) 의료진을 향한 폭언 폭행 절대 금지
- (5) 병원선정은 구급대원에게 맡겨주세요

□ 응급실 이용관련 FAQ

Q) 응급실 진료, 선착순이 아닌가요?

- A) 응급실은 일반 진료와는 달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라 응급도(중증환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합니다.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Q) 질병이 응급증상인지 판단이 어려울 때는 어떡하나요?

- A)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응급 처치상담, 응급실 현황, 약국의 위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가는게 가장 좋은가요?

- A) 무조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기보다는 전문화된 중소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면 최적화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심장/뇌/외상 환자라면 각각의 전문진료센터가 있는 응급실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소 럼피스킨병 방역 강화 및 조기 신고 안내

(자료제공: 농정국 동물방역과 ☎ 211-6553)

경기·충남·충북지역 국내 최초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라, 도내 유입 원천 차단 및 소 사육농가의 의심축 발생 시 조기 신고(1588-4060) 안내

□ 소 럼피스킨병 이란?

- (특징) 소·물소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임
 - * 잠복기간은 보통 4일에서 14일 정도로 짧으며 최대 잠복기는 28일
- (전파) 흡혈곤충, 오염물질 등에 의한 전파, 감염축의 이동(장거리 전파)
- (증상) 고열(40~41.5℃), 식욕부진, 우유 생산량 감소
 - 피부에 지름 1~5cm 정도의 결절(단단한 혹)이 형성
 - 피부외 눈의 각막, 구강 점막, 소화기, 호흡기 점막에도 병변(결절 등)
 - 눈, 코 분비물 증가와 과도한 침흘림, 임신소에서 유산 등

□ 소 사육농가 방역 조치

- 이상증상 발생 시,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부서) 및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
 - * 가축전염병 신고전화 : 1588-4060
- 축사 내외부 정기적으로 세척·소독 실시
- 축사 출입차량·사람에 대한 소독 강화
 -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시설(고정식·이동식 소독시설) 운영
 - 대인소독 (출입구 발판소독조 운영, 손소독제 비치 등) 실시
- 축사 주변 흡혈곤충(모기류, 흡혈파리류, 진드기류) 방제
- 축사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 출입 차량·운전자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농가 출입
 - 농가에서는 차량의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출입 허용
- 소 사육농가는 발생지역 방문 및 발생지역 소 구입 자제

소 럼피스킨병(LSD)

- ☑ 사람에게 감염되나요? **NO!**
- ☑ 소고기, 우유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YES!**



1. 럼피스킨병이 사람에게도 전파되나요?

럼피스킨병은 소(牛)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가축질병입니다.



2. 감염된 소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나요?

럼피스킨병에 감염된 소가 발생한 농장은 모든 소를 살처분하고 있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소비자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3. 소고기 및 우유 등 수급 상황은?

이동 제한 등으로 일시적으로 한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사육 마리수 등을 고려할때 수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원유도 가격 결정 특성상 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 백신 접종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나요?

백신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며, 사전에 비축 중인 백신 54만두 분량을 활용하여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백신 추가 도입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 모든 소에 대해서도 백신을 긴급 접종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공감(共感) 동물병원 지정·운영

(자료제공: 농정국 동물방역과 ☎ 211-6573)

유기동물 새가족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공감(共感) 동물병원」 운영(23년 창원지역 시범 추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늘어나는 반면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들개 등 사회 문제화 대두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지역 수의사의 사회적 기여행위의 일환으로 지역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재능기부 동물병원 활성화



□ 공감(共感) 동물병원이란?

- 유기동물의 인도적 입양 활성화와 반려동물의 보건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수의사의 사회적 기여 행위를 통한 입양가정의 의료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수의사회와 함께 경상남도가 지정한 재능기부 동물병원
- 지정현황 : 창원시 소재 57개 동물병원

□ 입양 반려동물 진료비 할인 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경남도민
 - 2023년 5월 이후 입양된 반려동물에 한하여 적용(창원지역 시범)
- 지원방법 :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할인바우처(50%, 1회) 발급
 - 사용기간 :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1회(재진료, 선결제 할인 적용 불가)
 - 사 용 처 : 보호소별 해당지역 지정 공감 동물병원
- ※ 지급된 할인바우처는 재발급 불가, 할인혜택 이후 동물병원에서 회수
- 진료범위 : 접종, 진료, 수술 등(미용, 용품 제외)

붙임

참여 유기동물보호소 및 동물병원 현황

□ 창원 유기동물보호소 현황(3개소)

시군	구분	주소	비고
창원시	창원유기동물보호소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71 (명서동)	시 직영
	마산유기동물보호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산2길 139-112	시 직영
	진해유기동물보호소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 476-2	시 직영

□ 참여 동물병원 현황(참여예정 57개소)

구분	개소수	참여병원	비고
창원수의사회	21개소	상아, 미래펫, 도그플러스, 용, 남양, 우리, 하늘, 노블, 필, 고려, 참좋은, 창원메디컬, 서울, 가온, 경상, 길, 창원, 감계, 남창원, 대방, 신대방	창원유기동물 보호소 입양 동물
마산수의사회	22개소	아이파크, 부산, 회원, 바른, 이화, 산호, 창생, 유앤아이, 펫유, 마산 도그플러스, 사랑으로, 한강, 삼계, 행복한, 메트로, 데파트, 한일, 펫츠올, 가람, 현재, 위드펫, 경일	마산유기동물 보호소 입양 동물
진해수의사회	14개소	오케이, 센텀, 쿨펫, 한솔, 조항일, 마린, 다올, 동인, 용원, 필유, 덕산, 진해의료, 신항, 아랑	진해유기동물 보호소 입양 동물

※ 유기동물 공감(共感) 동물병원 현판



23년 5월 전국 최초! 유기동물 공감 동물병원 운영

유기동물 입양가정에 사랑을 보냅니다.



경상남도

'공감 동물병원' 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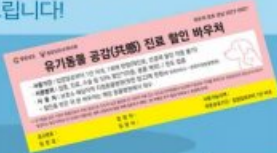
[재능기부 동물병원]

유기동물의 인도적 입양 활성화와
반려동물의 보건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반려동물 입양가정의 의료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수의사회와 함께 경상남도가 지정한
재능기부 동물병원을 말합니다.



유기동물 입양가정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시 바우처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단, 23년 5월 1일부터 적용, 창원시 3개 지역 보호소)
2. 바우처는 재발급이 불가하니 분실에 유의하시고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공감동물병원(57개소) 방문하세요!
3. 진료비의 50%정도 할인 혜택(1회)을 받을 수 있어요!
4. 재능기부에 동참해 주신 '공감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께
꼭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경남에서 가장 반려동물 가정이 많죠!

우선! 창원지역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창원시 지역 3개 동물보호소와
창원시에 소개한 동물병원 57개소가 참여합니다.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단, 창원지역으로 가셔야 해요!]



유기동물 입양가정에 사랑을 보태주는 '공감 동물병원' 을 소개합니다!

창원시에 소개한 57개 동물병원이 참여해요!

24시 동물의료센터	도그플러스 동물병원	허능동물병원The센터	신속동물병원	한림동물병원	유원동물병원
강계동물병원	마래개 동물병원	한동동물병원	상계동물병원	현대동물병원	조성동물병원
경상동물병원	선가 동물메디칼	가림동물병원	아이피즈 동물병원	희원동물메디칼센터	진해동물의료센터
고리동물병원	서울동물병원	경일 동물병원	위드벡동물병원	대동동물병원	공명동물병원
김동동물병원	신대원동물메디칼	태피트 동물병원	유연가이 동물병원	덕산동물의료센터	필유동물메디칼센터
남양중심동물병원	우리동물병원	페트로동물병원	철명동물병원	마린동물병원	한송동물병원
남양역동물병원	천문은 동물병원	비온동물병원	명우동물병원	생원동물병원	O.K 동물병원
노봉동물병원	청원동물병원	부산동물병원	명소울 동물의료원	산림동물병원	
대연동물병원	청원메디칼동물병원	서경으로동물병원	한진동물병원	아이동물병원	

재능기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남도과 경상남도수의사회는

건강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자료제공: 농정국 동물방역과 ☎ 211-6564)

도내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및 장애인보조조건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바랍니다.

□ 추진배경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
- 경제적 사정으로 반려동물의 치료 적기를 놓치는 사례 빈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단,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량 : 1,134가구
- 사업비 : 272백만원(도비 68^(25%), 시군비 136^(50%), 자부담 68^(25%))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장애인 보조조건 소유자
- 사업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조건 :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반려동물소유자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등록 동물만 참여 가능
 - 미등록 동물은 등록 후 진료비 지원 사업 참여 가능(등록비용 지원)
- 지원절차
 - 선정 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 전액 수납
 -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후, 진료 영수증 발급
 - 진료 영수증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관할 시군(읍면동)에 보조금 신청
 - 시군(읍면동)은 서류검토 후, 자부담(25%) 제외한 진료비 계좌 입금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경남이 함께합니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지를 갖고 있는 반려동물 소유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장애인보조견
- | **지원내용** 가구당 연24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25% 포함)
 - 진료비 24만원 청구시 : 18만원 지원, 6만원 본인부담
 - 지원조건 :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시술동물
 - 지원제외 : 미등록, 일반인식표, 외장형전자태그, 타 시·도 동물병원 진료
- | **신청기간** 2023년 (단,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람



사업 신청 문의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창원	225-5684	밀양	359-7184	창녕	530-6103	함양	960-8143
진주	749-6204	거제	639-6363	고성	670-4313	거창	940-8287
통영	650-6233	양산	392-5663	남해	860-3974	합천	930-3565
사천	831-3787	의령	570-4202	하동	880-2439	경남도	211-6564
김해	350-4135	합안	580-4394	산청	970-7844		

홍역(제2급 감염병) 감시강화 및 예방수칙 안내

(자료제공: 보건의료국 감염병관리과 ☎ 211-7633)

최근 전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홍역 감시체계 강화 및 예방을 위한 개인방역 수칙 등 예방접종 안내**입니다.

* (전 세계 홍역 발생 건수) '22년 약 17만명 → '23년 약 28만명(1.6배 증가)

□ 홍역(제2급 감염병)이란?

- 홍역은 Measles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급성 발열 및 발진성 증상이 특징이며, 기초감염 재생산지수가 12~18로 전염력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공기매개*를 통해 감염
 - * 공기 중 부유하는 비말 흡인, 비말·비인두 분비물과 직·간접 접촉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2회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97%이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1차)과 4~6세 시기(2차)에 걸쳐 반드시 2차례 예방백신(MMR)을 적기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

□ 홍역 개요 및 표준접종 안내

- ▶ **감염경로** : 공기매개감염(공기 중 부유하는 비말 흡인, 비말·비인두 분비물과 직·간접 접촉 통해 감염)
- ▶ **증상** : 급성 발열성 발진성 감염병
- ▶ **잠복기** : 7~21일(평균 10~12일)
- ▶ **환자관리**
 - 환자 격리 : 공기주의(격리기간 : 발진 발생 4일전부터 4일 후까지)
 - 접촉자관리 : 예방접종, 면역글로블린 투여, 증상 발생 모니터링
- ▶ **예방접종(MMR접종)**
 - 소아 : 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MMR 백신으로 2회 예방접종
 - 성인 : 면역 증거 없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1회 이상 접종
 - * 196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접종 불필요(의료종사자는 제외)

□ 감시강화 및 예방접종 당부

- 전 시·군 및 경남의사회 **홍역 감염예방 및 감시체계 강화** 붙임3 참고
 - * **[홍역 의심환자 감시강화]** : 1. 환자 내원 시 문진을 통한 해외여행력 확인, 2. 발진, 발열 등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3. 의심환자의 경우 진단검사 실시 및 관할 보건소 신고
- 홍역 적기접종 실시 및 의심증상 있을시 의료기관 즉시 방문 안내
-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방역수칙 철저

2023.11.1. 질병관리청

▶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1/7

2023.11.1. 질병관리청

홍역의 정의와 증상

기침 또는 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

○ **홍역 주요 증상** ○
(장백기 7~21일)

▶ **전구기** → **발진기** → **회복기**

전염력이 강한 시기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반점 등 발생

목 뒤, 귀 아래, 윗팔, 팔다리, 손·발바닥에 홍반성 발진 발생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

※ 기관지염, 그루늘 포진기 발한, 설사, 감기처럼 흔히 동반될 수 있음

2/7

2023.11.1. 질병관리청

홍역 주요 발생 국가

올해 국내에서 5명이 해외유입을 통해 감염되었고, 해외여행 증가로 국민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 **홍역 환자 발생 지역 분포** ○
중동·동남아·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발적 발생 및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2023년 전 세계 홍역 발생 건수 (약 17만 건(WHO 기준))

- 0명 (2079건, 0.7%)
- 1-9명 (1379건, 8%)
- 10-99명 (2294건, 13%)
- 100-999명 (2579건, 15%)
- ≥ 1,000명 (1279건, 8%)
- 미확인
- 확인불가

3/7

2023.11.1. 질병관리청

해외여행 시, 홍역 예방수칙

▶ **여행 전**

- 홍역 예방백신(MMR)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
-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받기

▶ **여행 중**

-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하기

▶ **입국 시**

- 입국 시 발열 또는 발진 등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4/7

2023.11.1. 질병관리청

입국 후 발열, 발진 등 의심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및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하여 의료기관 방문 (대중교통 이용 자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저 000 국가에 다녀왔어요!

5/7

2023.11.1. 질병관리청

홍역 예방접종 바로 알기

○ **연령별 홍역 예방접종 기준** ○

연령	접종 방법
생후 0-5개월	접종 대상 아님
생후 6-11개월 (가속접종) * 불가피하게 표준 접종 일정을 지키지 못할 때, 신속하게 면역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적용	해외여행 시 1회 접종 * 생후 12개월 이전의 MMR 접종은 접종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향후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2회 접종 필요
생후 12-15개월 (적기접종)	1차 접종
4-6세 (적기접종)	2차 접종
청소년 및 성인*	※ 면역의 증가가 없는 경우 최소 4주 뒤의 1회(1차) 또는 2회(2차) 또는 1회(1차) 접종

* 1968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홍역에 대한 자연면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접종 불필요

○ **홍역 면역의 증가가 없는 경우** ○
과거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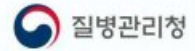
6/7

2023.11.1. 질병관리청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수칙 체크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7/7

2022.12.9



호흡기질환, 어떻게 예방할 건강!?

기침할 땐 옷소매로 기침 후엔 비누로 손씻기

• 기침예절 실천 네 가지 수칙 •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기침한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올바른 기침예절 생활화로 안전한 일상 회복에 함께해 주세요!

붙임 3

의료기관 홍역 감염예방 및 발생신고 협조사항

표 1. 의료기관 홍역 감염예방 조치 및 발생신고 협조사항

구분	주요조치 요청사항	관련근거 ¹⁾
발생신고	<p>○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위험요인 노출)을 감안하여 홍역이 의심되면 의사환자 발생신고</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홍역의 전형적인 증상 및 최근 발진 양상</p> <p>- 전형적인 증상</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홍반성 구진상 발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Koplik's spot</p> </div> </div> <p>- 최근 청소년 확진환자에서 나타난 비특이적 발진 양상</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div> <p>○ 홍역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다음의 실험실검사 기준에 따라 홍역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면 환자 발생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에서 특이항체(IgM) 검출 - 회복기 혈청 항체가가 급성기보다 4배 이상 증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p>* 비강도말,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혈액, 소변 등</p> <p>→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내(eid.kdca.go.kr) '감염병웹신고'를 통하여 신고</p> <p>* 관할보건소 팩스 신고 시 유선연락을 통해 신고 인지 여부 확인</p>	<p>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p>
진료 · 검사	<p>○ 내원환자 위험요인[¶] 노출여부(증상발생 21일 이내) 확인</p> <p>[¶] 홍역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아래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면 확인진단(measles realtime RT-PCR 검사)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여행력 유무 2. 홍역환자 또는 발진환자 접촉여부 3. 홍역환자와 동일 항공기 탑승 등 	<p>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6조 (준수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p>

(의사) 환자관리	○ 홍역 (의사)환자에 대해 상황에 맞는 안내·격리 조치(표 2)	지침 등
역학조사	○ 홍역 환자 발생 시, 관할보건소의 역학조사 협조 - 시설 내 노출상황 평가, 접촉자 분류 및 관리 위한 노출범위(같은 시공간에 머문) 내 전수 명단* 확보 등 * 예: 홍역환자 내원시점부터 +2시간까지 체류명단	제18조 (역학조사)
근무자 면역확인 및 예방접종	○ 근무자 중 홍역 면역 ¹ 이 없을 경우 조치(신규 입사/근무자 포함) - 근무자 면역(measles IgG 항체 양성) 확인 - 면역이 없을 경우, 금기가 아니면 MMR 2회 접종 ¹ 아래 4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면 면역있는 것으로 간주 1. 기록으로 확인되는 홍역 백신 2회 접종력 2. 혈청 검사로 확인된 홍역 항체(IgG)가 있는 경우 3. 실험실 검사로 확진된 홍역 병력 4. 국내 196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홍보	○ 홍역 유행 시 내원객 대상 홍보 - 해외여행 계획 환자 내원시 접종력이 없는 경우 MMR 접종 권고	-

표 2. 진료 중 홍역 (의사)환자 입원·귀가에 따른 안내·격리 조치사항

상황 ¹⁾		진료상황별 조치사항	비고
1	위험요인 노출력(-), 그리고 외래·응급실 진료 후 귀가	○ 면역이 있더라도 드물게 홍역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홍역 PCR 검사 음성 확인 시까지 타인과 접촉 최소화 - 이동 시, 대중교통 대신 자가차량 이용 - 외출, 등교, 등원 자제	권고 ²⁾
2	위험요인 노출력(+), 그리고 외래·응급실 진료 후 귀가	○ 홍역 PCR 검사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격리 안내	의무
3	외래·응급실 진료 후 입원	음압격리병실*에서 입원치료 (음압실 없다면, 병실 1인 격리)	의무
4	입원 중 홍역 의심		

1) 상황 1: 홍역 (의사)환자 신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법적의무는 없으나 공중보건·의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권고되는 사항

< 홍역 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환자가 진료 받기를 희망할 경우 안내사항 >

- 병의원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로 안내 및 진료(예: 당일진료 마지막 순서 등)
- 내원 시 가능하면 대중교통 대신 자가차량 등 타인 접촉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교통수단 이용
-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방문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상감염병관리지침(2024년) 및 홍역대응지침(2019) 등

1. 홍역은 어떤 질병인가요?

- 홍역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얼굴에서 시작해서 온 몸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습니다.
- 홍역은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백신 2회 접종으로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 구강 내 Koplik 반점 >



< 홍역 발진 >

* 사진 출처: 미국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 홍역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 공급)만으로도 호전됩니다. 그러나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중이염, 폐렴, 설사·구토로 인한 탈수 등)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3. 홍역 의심환자는 반드시 격리해야 하나요?

-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고 4일까지 격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홍역 의심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발견 즉시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등교 중지가 권장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4. 과거에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홍역에 감염될 수 있나요?

- 이전에 권장되는 접종 횟수(2회)를 모두 접종 받았더라도 매우 드물게 홍역에 감염될 수 있지만 증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합니다.

※ MMR 백신 예방효과 : 1회 접종 시 93%, 2회 접종 시 97% 예방

※ MMR 백신 권장 접종시기 : 생후 12~15개월, 만 4~6세 각각 1회 접종

5. 기존에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 영·유아 시기에 MMR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더 이상 추가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역의 증거*가 없는 성인의 경우, 적어도 MMR 백신 1회 접종이 필요하며, 의료인, 해외여행 예정자라면 4주 이상의 간격으로 MMR 백신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 면역의 증거: 1967년 이전 출생자, 홍역 확진을 받은 경우, 홍역 항체가 확인된 경우, MMR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6. 홍역 유행지역 여행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아

연령	과거 MMR 접종횟수	여행 전 MMR 접종	향후 MMR 접종일정
0-5개월	없음	접종대상 아님	권장 접종일정(생후 12-15개월 4-6세)에 따라 2회 접종
6-11개월	없음	1회접종 권고 (최소 여행 2주 전)	생후 12개월 이후 1회 재접종이 필요하며, 2차접종은 권장 접종 일정(4-6세)에 따라 접종
12개월~6세	1회접종	2차접종 실시 (1차접종과 최소 4주 간격)	-
	2회접종	필요없음	-

□ 청소년 및 성인

- 영·유아 시기에 MMR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더 이상 추가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면역의 증거*가 없는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출국 4-6주 전 MMR 백신 2회 접종(최소4주 간격) 완료를 권고합니다.

※ 면역의 증거 : 1967년 이전 출생자, 홍역 확진을 받은 경우, 홍역 항체가 확인된 경우, MMR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안내

(자료제공: 보건의료국 감염병관리과 ☎ 055-211-7623)

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건강상태가 좋은 날, 가까운 병·의원에서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맞으세요!!

*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

※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4위(10만명당 52.1명, 2022년 기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9. 12. 31. 이전 출생자, 2024년 기준)

※ 65세 이후에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 65세 이후에 접종했다면, 더 이상 추가접종 불필요

○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사업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국가지원

□ 접종 관련 문의처 : 시군 보건소,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접종기관에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기관 방문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백신선택(다당 백신 또는 단백결합 백신) 및 접종 시기 등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합니다.**
-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 접종 당일은 **반나절 이상 충분히 쉬고, 음주나 지나친 운동은 피합니다.**
- 접종 후 2~3일간은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안내

(자료제공: 보건의료국 감염병관리과 ☎ 055-211-7623)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예방접종을 통해 HPV로 유발되는 암*의 70~9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자궁경부암과 항문암의 90% 질암과 구인두암의 70%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06~2012년생(12~17세) 여성 청소년

1997~2005년생(18~26세) 저소득층* 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006년생 여성청소년,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2024년 마지막 사업대상자
- 2024.12.31.까지 1~3차 접종 지원하니, 기간 내 접종 필요

○ (지원백신) HPV 2가(서바릭스), HPV 4가(가다실)

○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필수)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주의사항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동행

○ 예방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 받기

○ 중증도 이상의 심한 급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하나,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우는 접종 시행 가능

○ 예방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앉아있고, 어지러울 경우 누워있기

○ 예방접종 후 2~3일간 주의 깊게 관찰,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받기

□ **접종 관련 문의처** : 시군 보건소, 위탁 의료기관



2024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HPV 예방접종 국가지원



- ☑ **지원대상** **건강상담 및 HPV 예방접종 지원**
 2011.1.1~2012.12.31. 출생한 12세 여성청소년
HPV 예방접종 지원
 2006.1.1~2010.12.31. 출생한 13~17세 여성청소년
 1997.1.1~2005.12.31. 출생한 18~26세 저소득층 여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일부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 **지원백신** **서바릭스(HPV 2가), 가다실(HPV 4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 입학 전 예방접종 확인

(자료제공: 보건의료국 감염병관리과 ☎ 055-211-7623)

감염병에 대한 방어면역이 약한 학령기의 집단생활은 감염병 발생의 근원이 될 수 있어,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생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빠뜨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기를 권장합니다.

□ 사업개요

- (확인대상)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
- (확인대상 예방접종)

구분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초등학교	4~6세 예방접종 4종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중학교	11~12세 예방접종 3종 ※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아)

○ (확인 및 조치 사항)

-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되면,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불필요
- 완료하지 않은 접종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방문 전 확인) 방문 접종
※ 자세한 접종 일정은 의사와 상담 필요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으면,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 등록 요청
※ 전산 등록이 어려운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 등록 요청

◆ 2024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백신(18종)을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비용 부담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 12세 이하 어린이(2011.1.1. 이후 출생자) ※ 2011년생은 2024년까지 국가지원 대상임
-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방문 전 확인 필수)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211-669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 추진배경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 건강 보호

□ 운행제한 개요

- (시행시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제한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6시 ~ 21시(토요일·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친환경 차량 등
 - 영업용 차량('25. 12. 31.까지)
 -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24. 11. 30.까지)
- (단속지역)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8개 시)
- (단속방법) 무인단속시스템 활용 실시간 단속
- (과 태 료) 1일 10만원(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 홍보내용

- 경남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 시도별 발령시기, 단속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콜센터(☎ 지역번호 + 120)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확인
 -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및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신청 가능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3. 12월 ~ '24. 3월) 상시 운행제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저공해조치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신청하세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일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 ~ 오후 9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창원·진주·통영·사천· 김해·밀양·거제·양산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과태료 1일 10만 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단속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	-------	--------------

한시적 제외대상

영업용 차량 (*25. 12. 31.까지)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24. 11. 30.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24. 11. 30.까지)
----------------------------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개념**
고농도 미세먼지(PM-2.5) 일정시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
- **발령일시**
당일 오후 5시 이후(다음 날 오전 6시 ~ 오후 9시 시행)
- **발령안내**
긴급재난문자
※재난문자 수신 안 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SMS 서비스 신청

제5차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단속기간 '23년 12월 ~ '24년 3월 오전 6시 ~ 오후 9시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과태료 1일 10만 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수도권 단속 제외대상

1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2 긴급 차량
3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단속 제외대상

1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2 긴급 차량
3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4 영업용 차량
5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6 소상공인 차량
7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8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부산·대구= '23. 11. 30. 전 신청 차량만 제외)	

저공해조치 신청 및 문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차량등록 시군 환경부서
- 민원콜센터 ☎ 055-120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등급제 콜센터 ☎ 1833-7435

<https://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하고 인센티브 받아주세요!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211-6654)

가정,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

□ 사업개요

- (참여대상) 개인: 가구의 세대주(세대 구성원)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학교 및 일반건물의 공용 부문
-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 (참여방법) 인터넷 신청: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cpoint.or.kr)가입
방문신청: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 방문 후 참여 신청서 작성

□ 인센티브 지급 기준

- (지급기준) 가정, 단지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 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
- (지급단가) 1포인트당 2원 이내 ※ 지자체별 상이
- (지급주기) 연간 2회(6월, 12월)
- (지급종류)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 ※ 지자체별 상이
- 감축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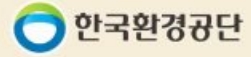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 이상~10% 미만	5,000p	750p	3,000p
10% 이상~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 이상	15,000p	2,000p	8,000p

- 유지 인센티브(2회 연속 감축 시)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 이상 ~ 5% 미만	3,000p	450p	1,800p

-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에너지사용량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표준사용량 50% 이하	5,000p	750p	3,000p



탄소포인트 제도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 참여조건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부여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참여대상

- ▶ **개인**: 가구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 **단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학교 및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 포인트 부여

개인 또는 단지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

- ▶ 지급 시기: 연간 2회(6월, 12월) 지급되며 1포인트당 최대 2원 지급 (지자체별 상이)

※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종류: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

● 신청방법

- ▶ **인터넷 신청**: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누리집(cpoint.or.kr)에서 가입(PC 및 모바일)
- ▶ **방문 신청**: 관할 사·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기준 및 변경내용

1 감축인센티브: 참여자가 에너지 유형별 5%이상 감축에 성공했을 시

감축률(이상) - (미만)	전기	수도	가스
5%~10%	5,000P	750P	3,000P
10%~15%	10,000P	1,500P	6,000P
15%~	15,000P	2,000P	8,000P

※ 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인센티브 4배 지급

2 유지 인센티브: 2회이상(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4회이상) 감축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참여자가 0%~5% 감축을 유지시

감축률(이상) - (미만)	전기	수도	가스
0%~5%	3,000P	450P	1,800P

※ 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인센티브 4배 지급

3 표준사용량 인센티브(가구 참여자 대상):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참여자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하로 사용했을 시 지급

에너지 사용량	전기	수도	가스
표준사용량 50%이하	5,000P	750P	3,000P

기준	변경
감축, 유지,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중 한가지만 지급(연간 최대 10만원)	(감축, 유지 중 한가지) +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중복 지급 가능(연간 최대 13.5만원)

● 참여시 유의사항

-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시**(가입시 에너지 고객번호 불필요)
 - 전기: 전기요금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및 입력
 - 상수도: 수도요금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기번호(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누리집에서 지자체별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 가능
- **관리비에 포함 납부시**(가입시 에너지 고객번호 불필요)
 - 주소 입력시 고객번호 자동 입력 문의전화 ☎ 032. 590. 3448 / 3432 / 3434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안내(경남스마트쉼센터)

(자료제공: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 211-2618)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상담과 조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서비스 안내입니다.

☐ 경남스마트쉼센터 이용안내

- 대 상 : 유아동, 청소년, 성인(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 이용방법
 - 전화상담 : 1599-0075(전국), 055)281-7333~5(경남) (평일 9~18시)
 - 내방상담 (전화, 온라인 예약 필요)
 - 개인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실시(평일 9~18시)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8(용호동) 경남연구원 1층 102호
 - 가정방문상담
 - 전화·온라인 신청 후 상담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상담

※ 모든 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

☐ 인터넷 및 스마트폰 바른사용 실천 가이드

- 편한자세보다 불편해도 ‘바른자세’가 좋아요
- 스마트폰을 ‘약속된 장소’에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요.
-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얼굴보며(eye-contact)’ 대화해 보세요.
- (보행·이동 시) ‘안전하게’ 가방에 꼭 넣어요.
- (공공장소 등) 통화, 음악감상, 동영상 시청 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본매너’를 실천해요.
- 자신(자녀)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QR코드를 통한 자가진단)



튼튼한 재난 대비,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희망보험

(자료제공: 도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 211-2876)

□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희망보험이란?

-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붕괴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 보험가입자의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

□ 재난배상책임보험 vs 재난희망보험 비교

구분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희망보험
가입의무여부	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인 자율
보험 목적물	재난취약시설 20종*	100m ² 미만 음식점
보상 대상사고	화재·붕괴·폭발(자연재해 제외)	
보상 수혜자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타인(본인 피해X)	
보상되는 피해	생명·신체, 재산 피해	
보상 범위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까지 / (대물) 1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 재난취약시설 20종: 휴게·일반음식점(1층, 연면적 100m² 이상),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관광)숙박시설, 장례식장, 주유소,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과학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농어촌민박

□ '22년 보험금 지급사례

(단위: 원)

업종	지역	사고원인	보험료	보험금 지급내역	
숙박업	양산시	화재	138,400	대인	1,200,000
아파트	양산시	화재(원인불명)	351,370	대인	500,000
아파트	김해시	화재(전기단락)	1,079,400	대인	1,727,900
				대물	4,966,076
숙박업	김해시	화재	126,100	대인	1,000,000
일반음식점	김해시	화재(전기누전)	20,000	대물	6,512,258

□ 보험 가입문의

- (재난배상책임보험) 15개* 보험사 / (재난희망보험) 1개(캐롯손해보험) 보험사

* 메리츠화재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흥국화재 1688-1688 | 삼성화재 1588-5114 | 현대해상 1588-5656 | KB손해보험 1544-0114 | DB손해보험 1588-0100 | 하나손해보험 1566-3000 | NH손해보험 1644-9000 | SH손해보험 1588-4119 | 신한 1544-3030 | MG새마을금고 1599-9010 | MG손해보험 1588-5959 | 캐롯손해보험 1566-0300

알고만 있어도 보상받는
갓성비 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희망보험

일상 중 예기치 못한
재난피해를 당하셨나요?

걱정 No! 근심 No!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20개 업종**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TIP] 피해보상액은?

대인 피해는 인원수 제한 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까지
대물 피해는 1사고 당 최대 10억 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재난취약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20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종 시설요약			
1. (관광)숙박시설	2. 과학관	3. 물류창고	4. 박물관
5. 미술관	6. 휴게·일반음식점(2종)	7. 장례식장	8. 경문장
9. 경정장	10. 장외매장	11. 국제회의시설	12. 지하(도)상가
13. 도서관	14. 주유소	15.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시설
17. 15종 이상의 공영주택	18. 경마장	19. 장외발매소	20. 농어촌민박

사업자 과실인데?!

식당, 주유소, 숙박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실수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Yes!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성비 좋은 의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면 모든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한가요?

No!

가입은 지정된 15개 보험·공제사를 통해 자유롭게 가입 가능하며, 인터넷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전 궁금한 사항은 아래 보험·공제사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1566-7771 | 연세생명 1566-8000 | 신한생명 1588-3344 | 유진투자 1688-1688
 삼성생명 1588-5134 | 현대생명 1588-5556 | KB생명 1544-0114 | CIG생명 1588-0100
 하나생명 1566-3000 | 하나생명손해보험 1644-9000 | 하나손해보험 1588-4119 | 신한 1544-3030
 MCB생명보험 1599-9010 | MCB손해보험 1588-9999 | NH농협생명 1566-0300

보험가입 여부 확인!!

현재 이용 중인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나요?

Yes!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에서 검색하시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업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의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도 가입 가능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임의보험
'재난희망보험' 이 2022년 9월 1일
 출시되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vs 재난희망보험 무엇이 다를까요?

보험 가입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음식점 (100㎡ 이상) 등 재난취약시설 20개 업종
재난희망보험	소규모 음식점 (100㎡ 미만)

의무가입 여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재난희망보험	임의가입 (희망자 선택적 가입 / 과태료 없음)

재난배상책임보험 vs 재난희망보험 어디서 가입하나요?

가입 가능 보험사	
재난배상책임보험	15개 보험 · 공제사 (희망사 선택가입)
재난희망보험	1개 보험사 (캐롯손해보험만 가입가능)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바로가기



재난희망보험
가입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재난 관련 정책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분	재난배상 책임보험	재난희망 보험	시민안전 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 여부	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인 자율	자자체 자율	개인 자율
보험 목적물	재난취약시설 20종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등)	100㎡ 미만 음식점	-	주택,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상대상 사고	화재·붕괴·폭발 (자연재해 제외)	화재·붕괴·폭발 (자연재해 제외)	물놀이사고, 운열질환, 범죄 등 ※ 지자체 보상정책에 상이	풍수해 (태풍, 홍수, 지진 등)
보상 수혜자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타인 (본인 피해 X)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타인 (본인 피해 X)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해당 지자체 시민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
보상되는 피해	생명·신체, 재산 피해	생명·신체, 재산 피해	생명·신체 피해	재산 피해

(055) 120으로 전화주세요! 민원상담이 쉬워집니다.

(자료제공: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 211-3685)

도내 어디서나 120번 전화 한 통화로 도민의 궁금증을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운영 현황

- (전화번호) 경남 어디서나 ☎(055) 120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18시 이후, 휴일은 당직실로 연결)
- (주요분야) 행정, 민원, 교통, 관광, 보조금 문의, 불편신고 등

□ 주요 분야

① 여 권, 전세사기,
보조금 등 문의
√ 신청방법, 처리절차 등

② 불편신고
√ 로드킬, 포트홀, 가로등 등
생활불편 신고 접수

③ 행정업무 도움
√ 도, 시군 업무담당자 확인
및 전화 연결

경상남도
민원콜센터
055-120으로
전화주세요.

민원상담이
쉬워집니다!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사업

(자료제공: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211-4765)

저출산 극복과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도와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추진배경

-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하여 농협과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협약 체결
- 도내 임산부 및 자녀양육 가정에 경제적 혜택 제공

□ 사업개요

- 상 품 명 : 경남아이행복적금, 아이든든적금
- 가입대상 : 거주지가 경남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
- 가입기간 : 1년
- 적립방식 : 자유적립식, 월 50만원 한도
- 우대사항 :
 - ①기본금리 + 우대금리 1.5% 지원 (도 0.75% + 농협 0.75%)
 - 중도해지 시 우대금리 미적용
 - ②출산용품 지원 (농협 자체지원 24,000원 상당)
 - 출산용품 지원은 10만원 이상 가입자(최종 잔액 120만원 이상)에 한함
- 가입장소 : 경남지역 소재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
- 가입서류 : 상품가입신청서(농협 점포별 비치), 임산부 확인서류(임산부 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시일	2019. 10. 1(화)
예금종류	자유적립적금
가입자격	거주지가 경남인 임산부 (모자보건법 기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
가입장소	경남지역 소재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
가입기간	1년(만기시 별도 청구 없이 자동 해지되어 가입자 명의 계좌로 입금)
가입좌수	태아(또는 영아)당 1계좌
가입금액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1만원 단위)
가입한도	연간 600만원
우대사항	기본금리 + 우대금리 연1.5% + 출산용품(24,000원 상당) 지원 <small>※ 출산용품 지원은 10만원 이상 가입자(최종 잔액 120만원 이상)에 한함</small>
가입시 증빙서류	출산전 : 임신확인서(병원발급), 임산부 수첩 출산후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 타	중도해지 금리는 자유적립적금 중도해지 금리적용

가입 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지역 소재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시일	2019. 10. 1(화)
예금종류	자유로우대적금
가입자격	거주지가 경남인 임산부 (모자보건법 기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
가입장소	경남지역 소재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
가입기간	1년(만기시 별도 청구 없이 자동 해지되어 가입자 명의 계좌로 입금)
가입좌수	태아(또는 영아)당 1계좌
가입금액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1만원 단위)
가입한도	연간 600만원
우대사항	기본금리 + 우대금리 연1.5% + 출산용품(24,000원 상당) 지원 * 출산용품 지원은 10만원 이상 가입자(최종 잔액 120만원 이상)에 한함
가입시 증빙서류	출산전 : 임신확인서(병원발급), 임산부 수첩 출산후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 타	중도해지 금리는 자유로우대적금 중도해지 금리적용

가입 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지역 소재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이용 안내

(자료제공: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211-4764)

다자녀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드리는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이용 및 참여 협력가맹점 혜택 안내입니다.

□ 추진배경

- 2자녀 이상 가정에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학원, 아동용품, 금융기관 등 가맹업체와 거래 시 할인 등 혜택 부여
- 民·産·官이 함께 참여하여 범사회적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카 드 명 :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BC카드)
- 사업내용 :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해 금융기관(NH농협), BC카드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 다자녀가정이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데 대한 카드사 할인 혜택 제공과 시군 협력가맹점* 이용 할인 혜택 제공


*시군 협력가맹점 : 시군의 공공시설, 음식점 등 업체로 카드수수료율 0.2% 할인

- 지원대상 : 막내가 만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정(임신부 가능, 위탁 아동 포함)
- 지원혜택
 - ① 학원, 병원 이용액 7%, 백화점, 대형할인점, 11번가, G마켓 등, 스타벅스 등,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GS25, CU 등 5% 할인
 - ② 시·군 협력가맹점 이용 시 협력가맹점별 3% ~ 50% 할인, 일부 무료
- 카드신청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

< >
☆ 경남 아이다누리 카드 참여 업체 혜택
🔍
☰



협력가맹업체에 드리는 혜택



- 1

비씨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할인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매출에 대하여 가맹점 수수료율 0.2% 할인
- 2

비씨카드 무이자 할부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매출에 대하여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 3


홈페이지 및 홍보매체 홍보

"경남아이다누리카드"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 4


가맹점 신청

주소지 시·군청 담당부서

문의 | 경남 아이다누리 카드 홈페이지 참조



경상남도
GYEONGNAM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가정양육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자료제공: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211-4775)

□ 시간제보육서비스란?

- 가정양육시에도 부모가 외출이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자녀 (6개월~36개월)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 주요내용

- 이용대상 : 어린이집 · 유치원 미이용 영아(6개월~36개월 미만)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한도 : 월 80시간]
- 이용방법

구 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방 법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1661-9361)	전화신청(☎1661-9361)
기 간	서비스 이용일 30일 전 9:00부터 1일 전까지	서비스이용 당일 15시까지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사전발급 필수) 	

- 보육료 : 시간당 4천원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시 3천원 정부지원 되어, 1천원만 부모부담(월 80시간 한도내)
 -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됨

이용사례	정부지원금액	부모부담금액
3시간 예약 후 2시간 이용시 → 미이용시간 : 1시간	2시간*3,000원=6,000원	2시간*1,000원 + 1시간(미이용시간)*4,000원 = 6,000원
2시간 예약후, 2시간 30분 이용시 → 초과시간 : 30분	2시간*3,000원=6,000원	2시간*1,000원 + 2,000원(초과 30분) = 4,000원

- 유의사항 : 예약취소 또는 초과이용시 별점제 운영

서비스 소개

부모님들을 위한 육아 회소식

시간제 보육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대 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시 간 평일(월~금) 오전 9시~ 오후6시

장 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료

※ 시간제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구 분	내 용	
보육료	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금	시간당 1천원
지원시간	월 80시간	

Q & A

Q 양육수당 수급자인 전업주부입니다. 시간제보육 정부 지원금 신청 별도로 해야하나요?

A 별도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양육수당을 수급중이라면 정부지원금이 자동지급 됩니다.

Q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적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양육수당은 전액지급 됩니다.

Q 시간제보육은 기본보육반과 통합보육을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반에는 별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독립된 보육실에서 교사 1인당 영아 3명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다른 지역에 있는 시간제보육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이용 가능합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필요할 때 원하는 기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Q 지원시간인 월80시간을 모두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달은 이용 못하나요?

A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부담금(4천원)100%로 결제됩니다.

이용절차 및 방법



01 / 가입 및 등록

- **가입**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PC버전이나 모바일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
- **등록**
 - 부모 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클릭
 - 기관 등록 : 관리기관 및 재공기관에 아동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처음 1번만 등록하시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02 / 예약

- PC/모바일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 처음 이용할 경우, 아이 적응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상담하여 예약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에서 아동등록한 경우, 전화로만 예약 가능합니다.



※ 예약 변경시 주의사항

- 예약 변경, 취소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일 5일전까지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4일전 ~ 3일전	2일전 ~ 1일전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	-2	-3	-4	-5	-7

※ 당월 누락 벌점이 -7점 이상일 경우 바우처 지원 및 사전예약이 제한됩니다. (당월 벌점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03 / 이 용

- 운영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준비물 : 기저귀, 여벌옷, 물티슈, 간식 등

04 / 결 제

-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기존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시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됩니다.



“ 언제나 나를 믿어주고,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는 선생님들을 떠올리니 시간제보육도 제게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대에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영아와 아이를 여유로운 미소로 따뜻하게 맞이하는 곳, 영아 컨설터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들과 아이의 발달 시기에 맞는 놀이 활동들로 아이도 행복하고 영아도 마음 놓이는 곳, 나와 내 아이를 믿어 존중하는 곳. 이것이 시간제보육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난방용 등유 · LPG 구입비 지원사업

(자료제공: 산업통상국 에너지산업과 ☎ 211-2292)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등유 및 LPG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3. 12. 18.(월) ~ 2024. 1. 19.(금)
- (신청대상)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소득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세대

구 분	내 용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차상위계층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사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 **지원 제외대상** : 에너지바우처, 등유쿠폰, 연탄쿠폰 대상자,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급여 수급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세대

- (신청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콜센터(1670-0205)
-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이용권형태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343,800원	256,600원	136,1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상세대(23. 4~) : 전용체크카드(하나은행)  ※ 기존에 발급받았던 전용 체크카드를 그대로 사용 가능 • 신규 대상자: 선불카드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세대	592,000원				

*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의 경우 59.2만원과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급
*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사용기간) 2024. 1. 10.(수) ~ 6. 30.(일)
- (사용방법) 등유·LPG 판매소에서 등유 및 LPG를 카드로 구매
- *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사용기간 후에는 미사용 잔액이 있더라도 사용 불가**
- * 난방용 등유·LPG만 구매 가능(차량연료 등 **타목적 유류·가스 구매 불가**)

2023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안내

(자료제공: 산업통상국 에너지산업과 ☎ 211-2274)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과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안내입니다

□ 현황('23. 9월 기준)

- 수소충전소 구축 : 경남 도내 17개소 운영
 - * 창원 11(팔용,덕동,성주,중앙,죽곡,사림,가포,대원,양덕,성주차고지,성주2), 진주 판문, 김해 안동, 거제 장평, 양산 물금, 통영 용남, 함안휴게소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 경남 도내 2,651대 보급(승용 2,576, 버스 75)

□ 수소충전소 구축

- 지원대상 : 주유소LPG충전소 등 잔여 부지제공이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
- 지원예산 : 일반용 30억원, 버스 등 특수용 60억원
- 의무운영 : 5년
- 지원절차 :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 지원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도민
- 지원예산
 - 승용차 대당 7천만원 중 33.1백만원 지원
 - 저상버스 대당 6.3억 중 5억원 지원 * 운수사업자용
 - 고상버스 대당 6.2억원 중 4.6억원 지원 * 운수사업자용
 - 화물차(10ton) 대당 6억 중 4.5억원 지원
- 의무운영 : 2년
- 지원절차 :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안내

수소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 지금 그 주역이 되세요!

수소는 도시가스 보다
안전합니다!

1
수소

* 출처: 연료별 상대적 위험도
(15개 항목평가, 한국산업안전공단 MSDS, 미국화학공학 외 DIPPR 등)

1.03

도시가스

1.22

LPG

1.44

가솔린

평가요소 상대적위험도(수소=1) 안정성: 수소 > 도시가스 > LPG > 가솔린

수소충전소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1

주요 부품
검사인증 체계



2

안전관리자 상주,
주변 안전거리 철저



3

3중 안전장치
설치



수소차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1시간 운행 = 성인남자 50명분 공기정화"

국내 버스업계 Rule

신입 = 내면버스
대리 = 전기버스
부장 = 수소버스

발판	초봉이 임사 10년	전기	대리 임사 10년	수소	발판 임사 20년
소통	☆☆☆☆	☆☆☆☆	☆☆☆☆	☆☆☆☆	☆☆☆☆
대인	☆☆☆☆	☆☆☆☆	☆☆☆☆	☆☆☆☆	☆☆☆☆
기술력	☆☆☆☆	☆☆☆☆	☆☆☆☆	☆☆☆☆	☆☆☆☆
총인	11111111111111111111	11111111111111111111	11111111111111111111	11111111111111111111	11111111111111111111

저소음 + 고효율 연비 + 빠른 충전 = 수소차 보조금은?



3,310 만원



5 억원

창원시 055-225-3307 진주시 055-749-8639 통영시 055-650-5473 김해시 055-330-2454 사천시 055-831-2769
말양시 055-359-5332 거제시 055-639-3963 양산시 055-392-2604 의령군 055-570-2604 함안군 055-580-2534

본사업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별 수소차 보급 가능대수는 문의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결함 보상) 신청 안내

(자료제공: 산업통상국 에너지산업과 ☎ 211-2295)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뚜껑형) 2005년 9월 이전 생산 제품,
결함 보상 관련 안내드립니다.

□ 추진배경

- 노후된 김치냉장고에서 화재 지속 발생하여, (주)위니아딤채에서 ‘20년 12월부터 자발적으로 제품 무상 수거·부품 교체 등을 시행
- 제품 판매 후 15년 경과되어 구매자 정보 확인 및 제품의 소재과악 어려움
- 도내 해당 제품 사용가구를 발굴하여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리콜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 실시

□ 개요

- 대상제품 : (주)위니아딤채에서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김치냉장고(뚜껑형)
- 리콜사유 : 부품의 노후화에 의한 합선 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
- 발굴요령
 - 1) 제품 확인 시, (주)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뚜껑형 구조 및 제조일자 확인
 - 2) 리콜 제품 제보
 - 위니아딤채 누리집(www.winiaaid.com), 고객상담실(1588-9588)
- ※ 제품 사용자의 직접 신고 외 타인(마을 이·통장,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등)이 제보할 수도 있다. 제보자에게는 (주)위니아딤채에서 제보내용 확인 후 모바일 상품권(5천 원) 증정

□ 홍보내용

- 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년층 등 ‘정보 취약계층’ 대상 집중 홍보 및 안내 요청

붙임1

리콜(결함 보상) 대상 제품

□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 대상('05. 9월 이전 제조 뚜껑형 모델)

대상 모델	제조기간	방법
<p>뚜껑형 구조 모델</p>  <p>대상 모델 사진(예시)</p>	~'05년 9월 이전	<p>노후 부품 (릴레이 포함 PCB 등) 무상 수거·교체</p>

□ 대상 모델 확인 방법

모델명 및 제조기간 확인 방법	
<p>(모델명)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의 모델명 확인</p> <p>예시) 모델명 : DD-12031D</p>	<p>(모델명 및 제조기간) 제품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형명과 제조기간 확인</p> <p>예시) 형명 : DD-C2205RT(B) 제조년월일 : 2002.10.28.</p>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미리! 미리! 체크

- ① 위니아딤채
- ② 2005년 9월 이전 제조
- ③ 뚜껑형 구조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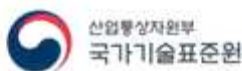


해당제품의 노후 부품 무상 교체 및 수리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니아딤채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김치냉장고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2020.12.2.).

(주)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 1588-9588
 ※ www.winiaaid.com/service/free/request

한국소비자원과 사업자정례협의체는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왜?

**“문제 없이 잘 썼는데...”
방심하면 “불이야!”**



**알아두면
유용한
노후제품
사용 시 팁**



최근 5년간 여러 회사의 다양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1,250여 건, 매년 250여 건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10년 이상 사용한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으세요.
2.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말아주세요.
3. 전원코드가 무거운 물건에 눌리거나 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전원콘센트와 플러그를 완전히 결합시켜 사용하세요.



에너지 절약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받아보세요!

(자료제공: 산업통상국 에너지산업과 ☎ 211-2253)

그린뉴딜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경남도의 에너지 절감 시책'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대상* 중 경남DR(Demand Response) 및 국민DR 신청 세대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대상(스마트 미터 무상교체)

- ① 개별세대와 한전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인력 검침중인 아파트의 기계식 또는 전자식 전력량계(재개발·재건축 예정 제외)
*시공업체(누리플렉스) 현장실사 후 확정
- ② 필수 제공 동의서 : 계약서(입주자대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입주민), 국민DR, 경남DR 참여 동의서

- 사업내용 : 스마트 미터 무상교체, 도민 참여형 에너지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 에너지사용정보 제공과 경남DR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마일리지 적립(회당 1.5천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전환 지급(최소 발행단위 5천원)

□ 경남DR 운영계획

- 감축발령 횟수 : 국민DR 포함 주 1회 이상 * 월4회 정도
- 발령기준 : 전력수급비상 준비 또는 관심단계, 도내 미세먼지등 '나쁨' 이상 예상 될 때 등
- 지급금액/방법 : 1,500원(회당) 마일리지 적립 및 지역사랑상품권 전환 지급(최소 발행단위 5천원)
- 성공기준 : 고객기준부하(CBL*) 기준 10% 이상 절감 시

* CBL(Customer Baseline Load) : 최근 평일 6일을 참고일로 하여, 4일을 유사일로 MID(4/6)방식과 최근 평일 10일을 참고로 하고 8일을 유사일로 하는 MID(8/10)방식을 도입하여 세대별 감축량을 산출

- 경남DR절차



□ 홍보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을 대상으로 많은 도민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지방세 고충해결 · 납세자 권리보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요청하세요!

(자료제공: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211-2515)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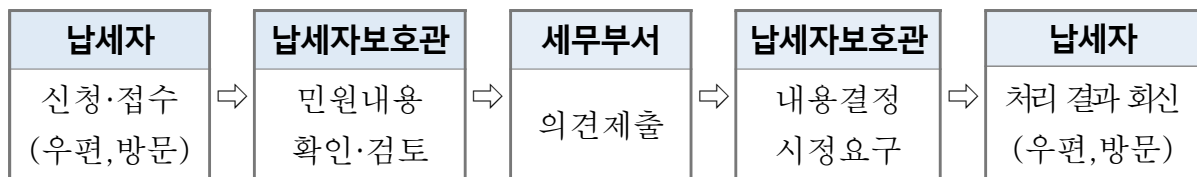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납세자의 입장에 고충민원을 전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주요내용

- 신청대상
 - 경남도와 도내 시군에서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로 인해
 - 1)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도민(고충민원)
 - 2) 세무업무처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도민(권리보호요청)
-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청 및 시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우편·방문)
 -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14일) 및 권리보호요청(7일) 이내 처리 및 회신

□ 처리절차



□ 도 및 시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창원	225-2308	밀양	359-5818	창녕	530-1093	함양	960-4034
진주	749-8276	거제	639-3186	고성	670-2076	거창	940-3312
통영	650-3242	양산	392-2122	남해	860-3057	합천	930-3045
사천	831-2228	의령	570-2731	하동	880-2034	경남도	211-2515
김해	330-0813	함안	580-2063	산청	970-6022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상남도 GYEONGNAM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와 독립되어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

경상남도 GYEONGNAM

사례 1

부당한 지방세 추정 고지서를 받았지만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김경남씨

지방세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을 신청해 부당한 추정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GYEONGNAM

사례 2

구체적 사유 없이 올해 다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사업가 이행복씨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GYEONGNAM

지방세 고충

관리 보호요청

지방세 고충과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에게!

납세자보호관이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GYEONGNAM

창원시, 전주지,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신정군, 함양군, 거창군, 밀천군

공 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지방세 고충해결 · 납세자 권리보호

납세자보호관 에게 요청하세요!

이의신청 기한을 놓쳤나요?

세무공무원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했나요?



신청 대상

경남도와 도내 시·군에서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인해

-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세무업무처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신청 방법

납세자

- 신청·접수 (우편, 방문)
- 처분결과 수신 (우편, 방문)

납세자 보호관

- 민원 내용 확인·검토
- 소관부서 의견 수렴
- 내용 결정 통보

납세자 보호관	
경상남도 ☎ 055)211-2515	창원시 ☎ 055)225-2308
진주시 ☎ 055)749-8276	김해시 ☎ 055)330-0813
통영시 ☎ 055)650-3242	의령군 ☎ 055)570-2731
거제시 ☎ 055)639-3186	남해군 ☎ 055)860-3057
창녕군 ☎ 055)530-1093	고성군 ☎ 055)670-2076
하동군 ☎ 055)880-2034	함양군 ☎ 055)960-4034
산청군 ☎ 055)970-6022	거창군 ☎ 055)940-3312
	합천군 ☎ 055)930-3045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안내

(자료제공: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211-4354)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종합관리 행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거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안내입니다.

□ 통합운영체제(GN-home) 이란?

-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 이력정보, 전자문서 정보 등 산재된 아파트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검색하는 통합정보시스템
⇒ 도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 웹사이트 주소 : <https://gnhome.kr>

□ 시스템 도입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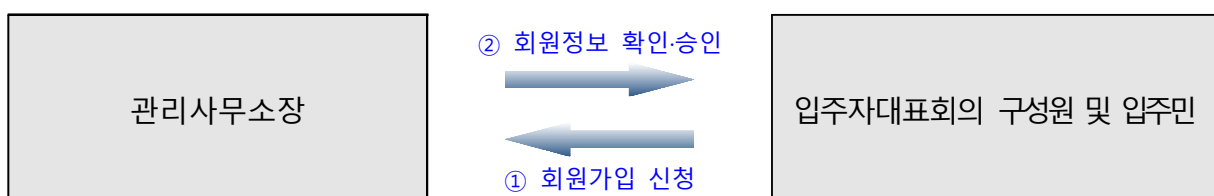
- 통합운영체제(GN-home) 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
-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통해 정보미공개 등의 주민 분쟁 및 갈등 해소
- 관리사무소에서 수기로 생산·관리되는 문서를 전자문서 전환 및 공개를 통한 업무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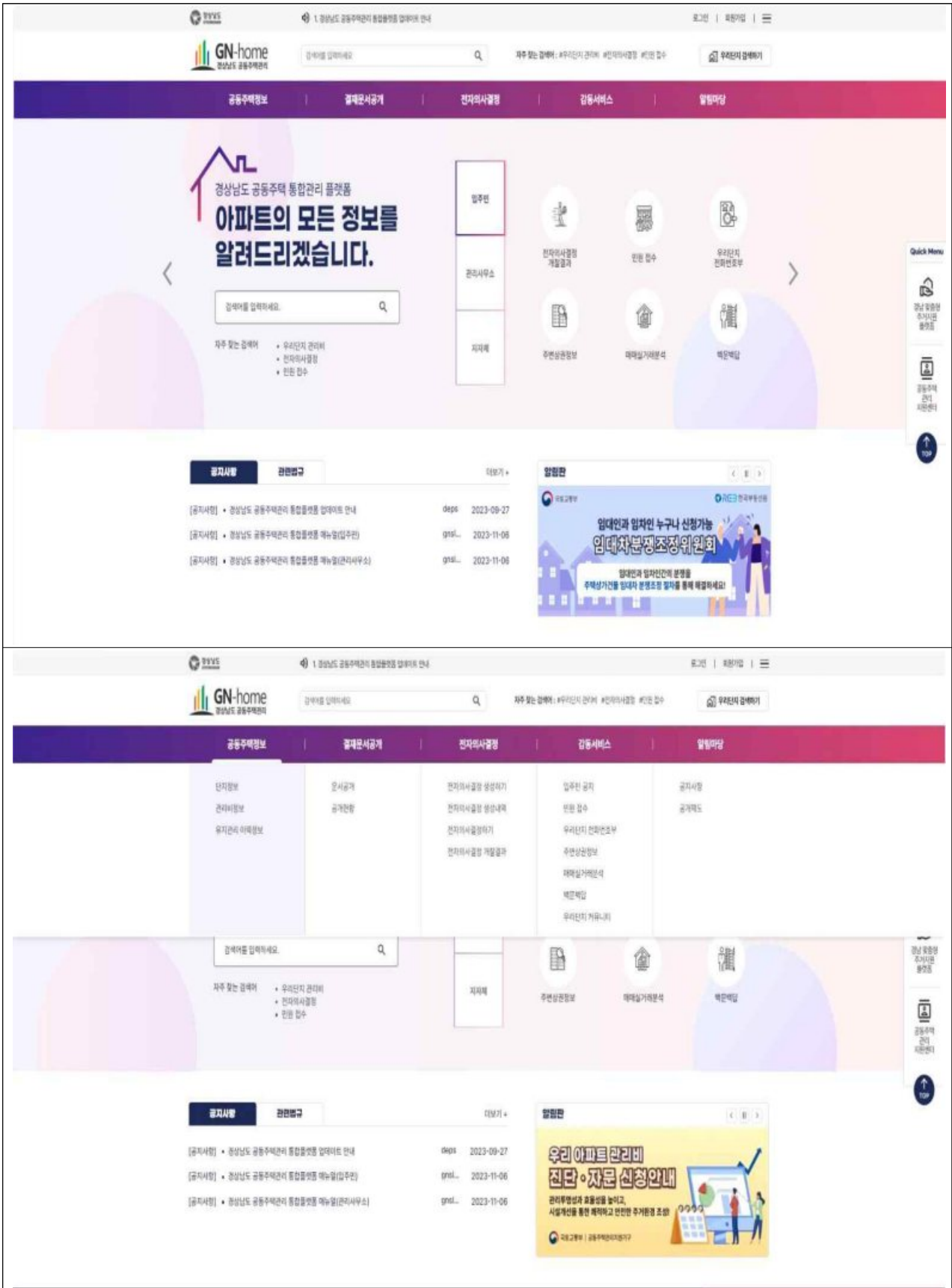
□ 시스템 주요기능

-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을 통한 문서공개, 관리비 및 유지관리 이력정보 제공
- 입주민에게 단지 내 주요상황 전파, 공동주택정보 및 민원 접수 기능 제공
⇒ 동별계시판 및 관리사무소 방문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공동주택 관련 모든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통합운영체제(GN-home) 시스템에서 조회·검색 가능

□ 시스템 가입절차 ※ 통합운영체제(GN-home) 시스템 알림마당(공지사항)에 매뉴얼 제공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민 회원가입
- 웹사이트 <https://gnhome.kr> 접속 → 회원가입(입주민회원) → 회원정보입력 →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회원정보 확인·승인 → 가입완료
- 회원정보 확인 및 승인 절차





경상남도 전세피해 지원 안내

(자료제공: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211-4343,4347)

□ 지원대상자 : 전세피해자

①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②경·공매 낙찰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③비정상 계약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 전세피해확인서 신청 및 상담 안내처

- 경상남도 민원콜센터(☎120), 전세피해지원센터[전국](☎1533-8119)
- 안심전세포털([http:// www. khug.or.kr/ jeonse](http://www.khug.or.kr/jeonse))

□ 금융지원

- 저금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 대상 : 연 소득 7천만원이하
 - 조건 : 2년(최장 10년)/ 대출한도 2.4억/ 연이자 1.2~2.1%
 - (도 지원) 1.2% ~ 2.1% 대출금리를 지원해드립니다('23. 하반기 시행 예정)
- 무이자대출(주거복지재단)
 - 대상 : 연 소득 3천만원이하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조건 : 최대 25개월/ 대출한도 1억

□ 긴급주거지원(LH 공공임대주택)

-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직선거리 40km이상 이사예정 등
- 최대 2년 거주 가능/ 무보증금/ 월 임대료 시세 30% 수준
 - (도 지원) 월 임대료를 지원해드립니다('23. 하반기 시행 예정)

한눈에 보는

전세피해종합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경·공매 낙찰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비정상 계약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법률지원



무료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 • 신청방법 : (방문상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서울·인천 사전예약 필수) (전화상담) 인터넷 "안심전세포털" 검색-전세사기피해자지원-예약신청(법률상담)
전문가pool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법률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pool 안내 * (법무사) 정액수수료(표준보수 최소 30% 감면)로 진행 / (변호사) 수수료 감면 無 • 신청방법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02-6917-8119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 구조대상지(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 소송 수행 가능 •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인천·경기·부산·매주 월·금 법구공 직원 상주) 및 법률구조공단 전국지부 * (담당지역 확인)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전국사무소이용안내 → 지부/출장소/지소

긴급주거지원 (LH·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지원기간	• 최대 2년 거주 가능(6개월 단위 재계약)
지원금액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임대료 6개월분 선납 또는 월납 중 선택 가능)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에 신청

기금저리대출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상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전세피해자 중 (3) 비정상계약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를 통해 피해확인서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신청

무이자대출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1인 가구 포함)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에 대출 연장 가능
대상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원 이하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금액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 부담 이자 없음)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 : 주거복지재단 우편 또는 FAX 접수(불가피한 경우 방문접수 일부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편의성을 위해 HUG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한 원스톱 서류 접수(방문, 우편 등) 가능

심리상담 지원



대상 및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피해 임차인 및 직계 존비속 심리상담 전문가 3회 유선/방문 상담 실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 방문 또는 유선(02-6917-8119), 메일(rent119@khug.or.kr) 신청

※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1~2%)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 출시('23.5) 예정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자료제공: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211-4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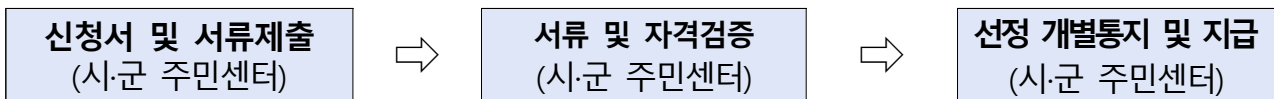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 쪽방, 반지하, 여인숙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구 당 40만원 한도의 이주비(이사비·생필품)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공임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민간임대 : 쪽방, 반지하 등에서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로 민간주택 이주 심사 통과한 자
- * 최대 5천만원 무이자, 2년 만기일시상환(최장 10년 연장) 상품
- (지원내용) 이주비(이사비·생필품)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신청기간) 2023. 1. 1. ~ 2023. 12. 31. (연중 수시)
- (지원방식) 이주한 공공임대·민간임대 주소를 기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및 지급(전입일 기준 3개월 내)

□ 사업추진 절차



□ 지원신청 안내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창원	225-4224	밀양	359-5388	창녕	530-1383	함양	960-4422
진주	749-8907	거제	639-4675	고성	670-2274	거창	940-3606
통영	650-5746	양산	392-3025	남해	860-3804	합천	930-3433
사천	831-3218	의령	570-3543	하동	880-2133	경남도	211-4316
김해	330-4316	함안	580-2715	산청	970-7362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자료제공: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055-211-4346)

□ 사업개요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용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및 임차보증금 대출금(4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①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 ②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③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 ④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사회초년생*(직장인, 사업자 등)
소득 기준	해당 요건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자
	미혼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m²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 사업 수혜자
 - (구비서류)
 - 공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 (미혼일 경우)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 (기혼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사회초년생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 (기혼일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도 같이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해당서류 제출 할 필요 없음

□ 사업 지원신청 안내

- 경남 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지원조건,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 경남바로서비스 사업내용, 공고문 참조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신청 안내

(자료제공: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211-4355)

공동주택 공동체 신뢰회복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주요내용 및 신청절차 등 안내입니다.

□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이란?

- 공동주택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아파트에 직접 가서 관리 서류와 현장을 살펴보고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걸쳐 개선할 점과 개선방법, 주의할 점 등을 자문

□ 주요내용

- 대 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집중식(지역난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컨설팅 분야 : 5개 분야 27개 항목
 - 관리행정, 회계, 시설행정, 소방시설, 공동체 활성화
 - 공동주택 분쟁, 일반민원, 재개발·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상 제외
 - ※ 소방시설, 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컨설팅 진행

□ 컨설팅 절차

- 입대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신청서 제출

①컨설팅 신청	②컨설팅반 구성	③컨설팅 실시	④컨설팅 결과 제출	⑤컨설팅 결과통보	⑥반영여부 제출
입대의 (관리주체) → 시·군 → 도	도	컨설팅반 (시군참여)	컨설팅반→ 도	도→입대의 (관리주체)	입대의→도 (관리주체)

- 결과통보 : 컨설팅 실시 후 30일 이내

-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안내

경상남도에서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컨설팅반’ 이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보다 나은 공동주택 관리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컨설팅 개요

● **분 야** : 5개 분야

- ▷ 관리행정 분야 : (1) 관리규약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3) 관리주체 (4)계약사무 (5)장기수선계획
- ▷ 회계업무 분야 : (6) 자금관리 (7)계정관리 (8)자산관리 (9)충당금관리 (10)관리비 등 수입비용 (11)사업계획 및 예산 (12)결산관리 (13)세무관리
- ▷ 시설행정 분야 : (14)안전관리계획 (15)소방계획 (16)승강기운영관리계획 (17)CCTV운영계획 (18)건축물안전점검 (19)정기진단 (20)어린이놀이시설 (21)전기안전관리 (22)공동저수시설 (23)중앙난방시설
- ▷ 소방시설 분야 : (24)공동주택 소방시설 점검(스프링쿨러,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소방차전개공간)
- ▷ 공동체활성화 분야 : (25)공동체활성화 사례 안내 (26)입대의부녀회 갈등 상담 (27)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안내

● **내 용** : 회계·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분쟁, 일반민원, 재개발·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

컨설팅 절차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 입대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 공동주택단지 ⇒ 시군 공동주택 부서 ⇒ 도 건축주택과
- **문 의** :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공동주택관리담당 ☎211-4355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자료제공: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211-4323)

건축허가 또는 그와 관련된 민원 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안내입니다.

□ 추진배경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축설계 후 행정청의 불허가 사례 지속적 발생(행정심판 증가)
- 건축허가 가능여부등을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확인으로 토지매입 및 설계비에 소요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예방과 민원 처리기간 단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미연에 방지

□ 개 요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 건축허가 부서에 신청하면 건축허가 가능여부, 규모, 건축허가 조건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제도
-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건축허가, 공장설립,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으로 청구된 민원을 심사하는 제도
- (신청방법)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 시·군 민원부서

□ 홍보내용

- 도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요청



사전심사청구제란?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결과(가·부)를 알려줌으로써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민원처리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닙니다.

- 운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 대상민원** ▶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 인·허가 (사·군별 상이할 수 있음)
- 운영기간** ▶ 연중
- 접수처** ▶ 시·군 민원실
- 처리기간** ▶ 총 30일(대상민원별 상이)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처리절차



경상남도 | 건축주책과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Tel. 055-211-4324 Fax. 055-211-4319

함께 만드는 행복한 새로운 경남

도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결정 제도 안내



경상남도 (건축주책과)



건축허가 사전결정 제도란?

- 이 민원은 건축허가 신청전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실계를 약식으로 작성한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건축물의 규모, 건축허가 조건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제도로, 건축물을 새로이 짓고자 하는 도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운영근거** ▶ 건축법 제10조
- 신청방법** ▶ 온라인(세움터), 방문, 우편
- 접수처** ▶ 시·군 건축허가부서
- 처리기간** ▶ 총 45일
- 수수료** ▶ 없음



누가, 무엇을 신청하나요?

건축물을 새로이 짓고자하는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 내용

- 0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 02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 0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민원인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온라인 신청 방법은 ?

▶ 세움터 (<https://cloud.eais.go.kr>)

신청서 내려 받기는?

▶ 경상남도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진행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전결정제도 효력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2년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자료제공: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211-4347)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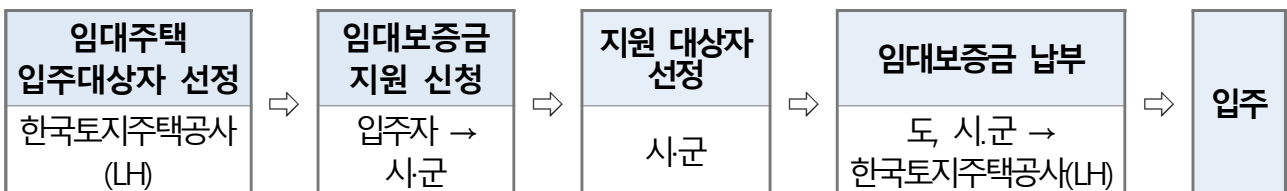
-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 가구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가구
 - 같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 무주택가구
- (지원기간)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 (지원조건) 본인부담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20백만원) 전액 무이자 지원, 지원주택 퇴거 시 원금 회수

□ 사업 추진 절차



□ 사업 지원신청 안내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창원	225-4224	밀양	359-5374	창녕	530-1383	함양	960-4932
진주	749-8907	거제	639-4675	고성	670-2274	거창	940-3606
통영	650-5746	양산	392-3025	남해	860-3804	합천	'23년 사업 미추진
사천	831-3218	의령	570-3544	하동	'23년 사업 미추진	경남도	211-4347
김해	330-4316	함안	580-2715	산청	'23년 사업 미추진		

- (신청서류)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공간정보 기반 도민 생활 밀접 정보 서비스 안내

[경상남도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사업 완료]

(자료제공 :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211-4453)

폭염, 지진, 홍수 대피소 등 도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행정정보들을 위치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공간정보플랫폼 서비스 안내입니다.

□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이란?

- 행정정보들을 공간정보 기반 시각화를 통해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시스템

□ 접속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서 <https://gis.gyeongnam.go.kr> 접속 또는,
- 포털사이트에서 “경상남도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검색하여 접속

□ 대민서비스 주요내용

- 재난안전, 의료, 문화, 교통, 전통시장, 국·공유재산, 깡통전세, 미분양 아파트, 부동산 가격·거래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GIS기반으로 서비스

< 도민생활 밀접정보 서비스 세부 내용 >

부동산포털 정보	깡통전세, 미분양아파트, 부동산가격·거래정보, 전세피해현황, 통계 등
재난안전 데이터 맵	지진·폭염·한파대피소, 홍수, 산사태, 미세먼지 등 자연·사회 재난정보 제공
공공의료 정보	의료기관(병원,약국), 상비약판매처, 자동제세동기, 산후조리원, 동물병원 등
문화/체육시설 정보	문화/체육시설 세부정보 및 위치조회, 공연/전시정보 사이트링크
교통시설 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위험요소, CCTV, 화물차량 차고지, 충전소 등 정보제공
전통사찰 정보	경남의 전통사찰/문화재 위치현황과 정보검색 및 조회
산업단지 정보	경남의 산업단지 검색과 입주기업 위치현황과 정보검색 및 조회
제로페이/전통시장 정보	제로페이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및 위치 검색
도시재생 플랫폼	시군 도시재생센터 회원 간 소통창구로서 네트워크 커뮤니티 기능
산림휴양 정보	경남의 산림휴양시설 위치정보 및 예약 사이트 링크
국·공유재산 정보	국·공유재산 조건검색 및 위치조회, 공유재산대부 여부, 각종 부동산정보 조회

경상남도의 모든 공간정보와 융합데이터는

gis.gyeongnam.go.kr/

경상남도 공간정보 플랫폼 에서 찾으세요.

I 도민 서비스 Web/Mobile

> 부동산 정보 및 주민생활 밀접 정보 서비스

-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V-world 등 기본 맵 서비스
- 위치기반 부동산 정보 서비스
(토지, 건물, 공시가격,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실거래정보)
- 공공의료정보 서비스
- 공유재산정보 서비스
- 주민공동체정보 서비스
- 제로페이/전통시장 정보 서비스
- 도시숲 조성 현황 서비스
- 산업단지 정보 서비스
- 재해·재난 정보 서비스
- 문화·공연/체육시설 정보 서비스
- 교통시설정보 서비스
- 전동사찰정보 서비스
- 도시재생 플랫폼 서비스

주민 생활 밀접 정보 서비스

위치기반 부동산정보 서비스

I 행정 서비스

> 과학적인 정책 결정 기반 서비스

- 고정밀 공간정보 및 방대한 속성 데이터
-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데이터 분석, 통계지도 생성
- 부서간 융·복합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 스토리텔링 방식의 지도 기반 브리핑 시스템
- 3차원 실내공간정보 활용 소방 GIS 연계, 시설물관리

과학적인 정책결정기반 서비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관리방안 주요내용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211-6644)

환경부에서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고자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23.11.23.)에 따른 관리방안 발표('23.11.7.) 주요 내용입니다.

□ 추진배경

-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 온 품목*을 대상으로 ①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②현장 혼란 최소화하면서 ③1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관리방안 마련
- 1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

* [식품접객업]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 1회용품 규제 확대·강화 변경사항

-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별표] 2 ('22. 11. 24. 시행)
- 주요내용 : ①종이컵, ②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③1회용 봉투 등 3가지 품목 외는 계도기간 종료 후 사용 제한

※ 종이컵은 규제대상품목에서 제외,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종합소매업에 한함)는 현행 규제 유지하되 과태료 부과안함.

<1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로 운영해 온 품목('22.11.24.) >

▶ 대상확대(사용억제)

①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② 대규모점포 : 1회용 우산비닐

▶ 준수사항 강화(무상제공금지 → 사용억제*)

* 사용금지로 유상판매도 안됨

③ **종합소매업(편의점, 슈퍼 등), 제과점업** : 1회용 봉투·쇼핑백

④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플라스틱 응원용품

- 이미 현장에 안착된 기존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은 현행 규제 유지

□ 관리방안 주요내용

- (종이컵)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감
 - 규제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다회용 컵 사용 지속 권장
 -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 유도
 -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의 소비자 불편 호소 및 고가 등
 - (비닐봉투)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 정착
 -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
- * 종합소매업에 한함



<1회용품 규제 확대·강화('22.11.24.) 내용>

- ▶ 관련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별표]
 - ▶ 대상확대(사용억제)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 대규모점포 : 1회용 우산비닐
 - ▶ 준수사항 강화(무상제공금지 → 사용억제*)
 - 종합소매업(편의점, 슈퍼 등),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쇼핑백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플라스틱 응원용품
- * 사용금지료 유상판매도 안됨
-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봉투(종합소매업) 3가지 품목 외는 제도기간 종료 후 사용 제한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 고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휴게, 일반 음식점, 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플라스틱 수저·포크·ナイ프 • 비닐식탁보 	시행 중
	제작배포업체 등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컵(규제대상 품목 제외 예정) •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22.11.24부터 시행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억제) 	시행 중
2. 대규모점포 내 식품 판매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시행 중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시행 중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 우산 비닐 	시행 중 '22.11.24부터 시행
	제작배포업체 등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선전물 	시행 중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시행 중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 응원용품 	'22.11.24부터 시행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 과 업소)	일반 도·소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제공금지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시행 중
	제작배포업체 등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선전물 	시행 중
	종합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억제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22.11.24부터 시행
7. 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공연시설 등	제작배포업체 등 사용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선전물 	시행 중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함께해요!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211-6645)

'22.12월 말부터 전국 의무 시행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내용물은 비우고, ②라벨은 떼고, ③페트병을 압축하고 ④일반 플라스틱과 구분배출하기

□ 제도안내

- 관련근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568호)
- 시행시기 : 공동주택 '20.12.25. ~ / 단독주택 '21.12.25.~ ※ 계도기간 1년
- 내 용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을 위하여 투명페트병을 타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제도
 -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위반시, 폐기물관리법 제15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10/20/30만원)
- 필 요 성 : 부가가치가 높은 투명페트병을 고품질 재활용자원으로 활용

□ 배출방법

- ① 투명페트병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구기
- ② 라벨을 제거하기
- ③ 페트병을 압축하고 뚜껑 닫기
- ④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버리기

※ 무색 투명페트병은 생수와 음료가 담겼던 병으로 유색페트병이나 식용유·물엿 등이 담긴 투명페트병, 커피 전문점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은 해당없음

□ 홍보협조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항 및 배출요일·방법 등 안내
 - ※ 구체적인 배출요일·배출지점 등은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자원순환부서 문의

님아, 그 페트병 그냥 버리지마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함께 해요

세줄 요약

- 1. 투명한 페트병은 내용물 라벨은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과 비우고, 떼고, 압축하고, 구분하기
- 2. 분리배출 왜 해야 하나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
- 3. '22. 12월 전국 의무 시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왜 해야 할까요?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

부가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 원료로 활용하여 다시 재활용 용기가 되거나, 의류·가방·신발 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명 페트병, 올바르게 배출하기

- 1. 내용물 비우기
Point!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구기
- 2. 라벨 떼기
Tip! 따뜻한 물을 안에 넣으면 라벨 쉽게 제거 가능! (온탕목욕탕도 좋아요)
- 3. 페트병 압축하기
Point! 페트병 압축하고 뚜껑 달기
- 4. 구분하여 버리기
Point!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버리기

<'22. 12월 전국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Q&A 자주하는 질문 1

- Q 투명과 투명 고리는 따로 배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투명과 투명 고리는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분리가 가능하므로 라벨만 제거, 뚜껑을 닫아 배출해주세요.
* 사실은 투명과 투명 고리를 모두 제거하여 별도 배출하는 것이 가장 환경 친화적입니다.
- Q 색은 있지만 투명한 페트병은 어떻게 배출하나요?
A 이런 경우, 유색 페트병으로 간주하고 타 플라스틱과 같이 배출해 주세요.
- Q 같은 무색 투명 페트병 중에서도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배출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서요?
A 네, 맞습니다. 식용유나 물엿 등이 담긴 투명 페트병은 완벽한 세척이 어려워 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일 수 있어요.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는 생수나 음료가 담긴 투명 페트병만 배출해주세요!
* 커피 전문점 등의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 페트병과 따로 분리 배출해주세요.

Q&A 자주하는 질문 2

- Q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네, 맞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Q 단독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어떻게 배출하나요?
A 지역마다 배출요일 및 방법이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또는 자원순환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시 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나와 미래세대를 위한 순환경제 문화조성에 동참해주세요!"



공 란

폐가전제품, 내 집앞 맞춤형수거서비스 신청 안내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211-6645)

7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폐가전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분리수거처럼 별도의 신청없이 정해진 날에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 추진배경

- 現 폐가전제품 수거 시스템(무상방문수거서비스)의 한계 노출
 - (배출) 중·소형 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 동시 배출시 수거 가능
 - * (대형)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 (중·소형) 선풍기, 밥솥, 전기주전자 등
 - (예약) 노년층의 경우 인터넷 접속 어려움 및 오프라인(콜센터) 이용시간 제약

□ 사업개요

- (사업시군) 7개 시·군(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양산시, 창녕군, 함양군, 합천군)
- (사업대상) 공동주택 및 마을 ※ 단독주택 추후 확대예정
- (수거품목) 대형 및 중·소형 폐가전제품(수량무관)
 - ※ (수거불가)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악기류(피아노 등),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 (사업내용)
 - 서비스 신청 공동주택 내 맞춤형수거 용품 보급·설치
 - 제품군별 분리배출용 마대에 배출 시 정해진 날짜(월 1회)에 수거차량으로 수거
- (접수기관) 공동주택 소재지 시청·군청 환경과(자원순환과)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서비스 희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관할 소재지 시청·군청으로 신청서 제출

- 진주시 청 소 과 자원재활용팀 (☎ 055-749-8705 /팩스 055-749-5349)
- 통영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 (☎ 055-650-1313 /팩스 055-650-1399)
- 사천시 환경사업소 청소팀 (☎ 055-831-5600 /팩스 055-831-6064)
- 양산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 (☎ 055-392-2643 /팩스 055-392-2649)
- 창녕군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 055-530-1625 /팩스 055-530-1610)
- 함양군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 055-960-6133 /팩스 055-960-6243)
- 합천군 환경위생과 환경개선팀 (☎ 055-930-3304 /팩스 055-930-3299)



폐가전 무상맞춤수거

간편 배출·무료 사용·맞춤수거

수거품목	수거수량	수수료
청소기	100대	0원
선풍기	20대	0원
다리미	30대	0원
⋮	⋮	⋮

별도 가입 없이! 수수료 낼 필요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수거비용 **0** 원



폐가전 무상 맞춤수거

가정에서 폐가전제품을 배출하는 방법은?



① 중소형 폐가전제품

폐가전 맞춤수거 서비스 이용



② 대형 폐가전제품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

폐가전 무상 맞춤수거 서비스는

폐소형가전도 내 집앞에 배출하면 분리수거처럼 별도의 신청없이 정해진 날에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폐가전 무상 맞춤수거 서비스 용품(KIT) 설치 방법



Step #1. 물품 수령 »

Step #2. 물품 설치 »

Step #3. 폐가전 수거 »

Step #4. 정리

폐가전 무상 맞춤수거 서비스 품목 구분 기준

구분	품목	배출방법
온도교환기기	정수기, 제습기	온도교환기기 전용마대 사용
디스플레이기기	TV,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기기 전용마대 사용
통신사무기기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공유기, 이동전화 단말기	통신사무기기 전용마대 사용
일반전기전자제품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감시카메라, 공기청정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프라이팬, 제빵기, 헤어드라이어 등	방수포 사용

수거 불가 품목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악기류(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자료제공: 도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 211-2836)

풍수해와 지진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셨을 때 경제적 안정과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하여 재난을 대비합시다.

☐ 풍수해보험이란?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재고자산)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소유자 외 세입자까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보조해 드립니다.

☞ (정부지원율) 주택·온실 70%, 소상공인 70%, 취약지역* 87% 지원

*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

☐ 소상공인 우대혜택은?

- 보험가입 증권(사본)으로 아래의 우대혜택(중복가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우대 혜택	1.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평균 1.2% → 0.8%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 0.1% 우대 적용	
	2. 신용보증 한도 상향 일반 85% → 90%		일반소상공인 여성가장지원자금
	3. 5천만원 이하 신용보증 심사 우대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
문의처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1588-7365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가입문의

- 시·군청 재난부서, 읍·면·동 풍수해보험 담당자, 7개 판매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2100-5103	2100-5104	1588-5105	2100-5106	2100-5107	2100-0164	2100-0165

붙임**풍수해보험 주요 보상사례** 주택

가입	목적물	주택	지역	남해군
	총보험료	41,900원	가입자부담	19,900원
			보험료지원	22,000원
피해	피해일자	2019. 9. 22.	피해유형	태풍
	손해구분	전반파	피해면적	33㎡
지급	지급보험금	33,750,000원	미가입 시 재난지원금	반파 6,500,000원 (보험금이 5.2배 큼)

 온실

가입	목적물	온실(비닐하우스)	지역	밀양시
	총보험료	2,895,500원	가입자부담	243,200원
			보험료지원	2,652,300원
피해	피해일자	2016. 10. 5.	피해유형	태풍
	손해구분	소파	피해면적	1,650㎡
지급	지급보험금	15,859,800원	미가입 시 재난지원금	소파는 재난지원금 미지원

 소상공인

가입	목적물	소상공인 재고자산	지역	포항시
	총보험료	81,300원	가입자부담	40,200원
			보험료지원	41,100원
피해	피해일자	2019. 10. 3.	피해유형	태풍
	손해구분	-	피해면적	-
지급	지급보험금	30,000,000원	미가입 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미지원

[전문]가정위탁제도 부모 모집 홍보

(자료제공: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211-4756)

친부모의 여러 가지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발생했을 때 기준에 적합한 가정위탁부모 모집을 위한 홍보입니다.

□ 가정위탁이란?

-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

가정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보호비 지원 1백만원/월)
 -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등
-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위탁가정 조건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종교의 자유 인정,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미만일 것
 -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 내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 조건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 희망 시 반드시 예비위탁 부모 교육 이수

□ 위탁가정 혜택

- 아동의 생계, 의료, 교육급여, 상해보험 가입, 가정위탁보조금 지원(차등지급)
- 전문위탁가정 전문아동보호비(1인당 월100만원)

□ 문의처 :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055-237-1226)

뜻하지 않게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가정 위탁 부모 모집



— 가정위탁 보호제도 —

친부모의 여러가지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발생했을 때,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부모가 일정기간 양육하는 제도

— 전문가정위탁사업 —

영유아, 학대피해아동(0~6세), 경계선지능 아동, 장애아동 등 전문적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위탁부모가 보호하는 제도

일반위탁부모 기본요건

- 소득, 주거가 안정적인 가정
-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정
- 25세이상(부부인경우 부부모두)이며 위탁아동과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것

전문위탁부모 자격기준

- 기본요건(위 내용참고)
- 자격요건(사회복지사,보육교사,교사,의료인,청소년상담사 등 전문 자격증 중 1개이상 소유자, 심리전공자 (부부 중 한명))

위탁가정 지원혜택

01 신청

-전화/ 홈페이지
055.237.1226

02 양성교육

-일반위탁: 5시간
-전문위탁:20시간

03 자격조사

-서류심사
-가정조사

04 위탁부모자격인정

위탁가정 지원혜택

- 아동의 생계,의료,교육급여
- 가정위탁양육보조금(30~50만원 차등지급권고)
- 전문아동보호비(전문위탁가정-1인당 월100만원)
- 아동 상해보험가입 등



경상남도
GYEONGNAM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

(자료제공: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211-4756)

☐ 긍정양육이란?

긍정 양육은

-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21.1월) 이후 체벌 대신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양육 방법입니다.

☐ 긍정양육 129원칙

- 긍정 양육 129원칙은 긍정양육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전제 1가지, 실천원리 2가지, 실천방법 9가지로 구성된 양육 방법으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긍정양육 129원칙 기본전제 1

1 긍정 양육의 기본 전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긍정양육 129원칙 실천원리 2

2 긍정 양육의 실천 원리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양육 129원칙 실천방법 9

9 긍정 양육의 실천 방법

1 자녀 알기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를 잘 살펴주세요.

2 나 돌아보기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아켜보세요.

3 관점 바꾸기

내 자녀의 '문제'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보세요.

4 같이 성장하기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주세요.

5 온전히 집중하기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주세요.

6 경청하고 공감하기

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7 일관성 유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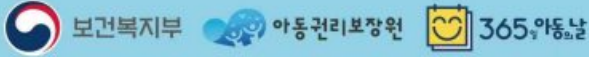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주세요.

8 실수 인정하기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주세요.

9 함께 키우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세요.

긍정 양육의 시작입니다.

① 자녀 알기

우리 아이만의 성향을 이해해 주세요.

② 관점 바꾸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민법상 징계권 폐지'

부모라도 아이를
체벌할 권리는 없습니다.



긍정 양육 129원칙
긍정 양육 실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
배우 박진희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수질관리과 ☎ 211-6715)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에 대하여 기간('24.6.30.까지)내 시·군 지하수 담당부서에 자진신고 하도록 함

□ 자진신고 개요

- 목 적 :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 및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제고
 - 신고기간 : '23. 7. 1. ~ '24. 6. 30.
 - 신고대상 :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제7조) 또는 신고(제8조)를 하지 않고 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 ※ 환경부공고 제2023-369호(2023.6.30.)에 따른 대상지역 : 도내 11개 시·군
-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합천군

□ 자진신고 방법

- 신고기관 : 해당 시·군 지하수 담당 부서
- 신고서류

구 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허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같은 법 규칙 별지 제4호)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신고)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같은 법 규칙 별지 제9호)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자진신고 혜택

-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 허가 미이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신고 미이행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9조제1호)
- 지하수개발·이용 인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 신고 시 최초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반려동물지원센터 정식 개장

(자료제공: 밀양시 축산과 ☎ 359-7173)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통한 반려동물 문화 거점 육성 및
내실있는 센터 운영으로 밀양선샤인테마파크 활성화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시설명: 밀양 반려동물지원센터
- 위치: 밀양시 단장면 관광단지1길 51(단장면 미촌리 990)
- 면적: 토지 6,726㎡, 건물 1,967㎡
- 운영방식: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운영
- 주요내용
 - 반려동물복합센터 및 반려동물놀이공간 운영(매주 월요일 휴무)
 - 세대별·연령별 맞춤교육 및 체험콘텐츠 제공
 - 다양한 주말이벤트 행사 및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개최

□ 주요시설

구분	명칭	주요내용
실내시설	양서·파충류 체험 및 전시부스	· 크리스티드게코 외 8종 15마리 전시 · 카페이용 고객 이색동물 체험 기회 제공
	독플레이 정글	· 계절별 가변적 운영으로 하절기 조립식 실내수영장으로 특화 운영
	교육실/회의실	· 반려견 예절교육 등 교양강좌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
	반려홀, 무인용품점 캐플레이정글	· 키오스크 활용 및 특색있는 용품 판매 · 반려묘와 교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야외시설	반려견 운동장	· 소·중·대형견(예정) 운동장 구분 운영 · 반려인 휴식공간 마련으로 시설 만족도 제고
	반려견 수영장	· 하절기 => 소·중형견 위주 운영 · 하절기 외 => 패들보드 등 기타 놀이시설 활용
	독피크닉장	·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피크닉 체험 가능